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임 상 범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南京國民政府의 外國人 管理와
北京地域의 韓人

- 행정 파악 및 거주 통제를 중심으로 -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김 은 진

南京國民政府의 外國人 管理와
北京地域의 韓人

- 행정 파악 및 거주 통제를 중심으로 -

임상범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김 은 진

인 준 서

김은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중국은 고대부터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와 동시에 외국인이 중국에 오고간 역사도 오래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머무르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중국은 그에 대한 관리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서 중국은 열강들의 침입과 조약의 체결로 중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서양에 의해 과분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어가면서 위기에 대처할 새로운 형태의 정치공동체로서 ‘근대 국민국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그 새로운 공동체의 집단적 주체인 ‘국민’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그 설정의 범위나 자질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국민국가의 주체인 국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동시대에 ‘타자’로서 규정되어 베이징에 거주하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자국 내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規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음은 곧 외국인을 과거 불평등조약 체제 하에서와는 다르게 대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 여겼다. 이를 위해 남경국민정부 시기 베이징 내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남경국민정부 시기 한인은 일본인과 더불어 베이징 내 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절대적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일본의 중국 대륙으로의 침입이 서서히 본격화되어가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서서히 고조되어 가고 있던 시기에 일본 국적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던 한인들이라는 복잡한 대상은 정부가 당시 베이징에 있던 외국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관리하고자 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정부는 베이징 시내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모두 자국민과 마찬가지로 자국 법률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

인의 본국과 중국의 관계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는 외국인이 속한 상황에 따라 그 처리 방법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크게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인(無約國人), 구약이 이미 폐기되었으나 새로운 조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외국인(舊約已廢新約未訂之外國人), 그리고 조약을 체결한 외국인(有約國外國人)으로 구분하였다.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입국 심사로부터 시작되었다. 본 국에서 발급받은 護照에 대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입국하는 외국인의 신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도모하였다. 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이의 입국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중의 안녕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입국 이후 일시 체류 혹은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의 현황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이는 일반 중국인에 대한 호구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호구조사 과정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발견될 경우 따로 명부책을 만들고 통계표를 작성하여 중앙 부서로 보고하는 등의 특별한 주의 를 계속해서 기울였다. 거주 중인 외국인의 숫자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가게, 직업 분류, 외국인이 연루된 분쟁 유형과 발생 빈도, 주택 임대 수, 여행 허가증 발급 수 등 소소한 부분까지도 통계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정부는 상술한 과정을 통해 관리 대상으로서의 외국인을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정하였다. 그 가운데 행적과 거주지 문제에 대하여 주목해보았다. 이 두 가지는 베이징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 여겼기 때문이다.

베이징 내 혹은 베이징 외부로 나가려는 외국인의 행동에 대한 통제는 ‘내지여행허가증(內地游歷執照)’의 발급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본국 영사관에서 발급하고, 중국 공안당국의 인준을 얻어야만 허가증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외국인이 베이징 이외의 지역으로 가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검사 시 제출해야 했다. 만약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임의로 수정을 가한 경우 그 행동에 제재를 당할 수도 있었다. 지나치는 지역 관청에서 모두 허가증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함으로써 외국인의 움직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졌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토지 매매를 금지했던 중국에서 외국인에게는 주택에 대한 임대만이 허가되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당국의 인준을 거쳐야만 성립되었다. 1930年(민국 19年)에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을 제정·반포함으로써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성립 절차와 비용, 계약 당사자의 의무, 위반 시의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해놓고 이를 실시해나갔다. 그러나 계약 성립을 위한 절차의 복잡함, 소모되는 비용, 그리고 공안국 인준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외국인들만이 베이징 내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당시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은 주택 임대를 둘러싸고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정부의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가 집주인 중국인과 갈등을 일으켜 중국 경찰에 신고되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주택을 불법적으로 점거한 채 정부에서 엄금하는 마약류와 같은 물품을 다루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중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 계약을 성사시켰다가 나중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기도 하였고, 일부 중국인들은 한인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점을 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만연하였다.

일반적으로 한인, 외국인에 대한 정책들은 중국인에게 가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까다로운 경장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제대로 준수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생계는 자연스럽게 보장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과정의 복잡성과 까다로운 조건, 그리고 비용의 문제 등은 결코 많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차별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정책들이었다.

목 차

논문개요

序論.....	1
---------	---

本論

I. 관리 대상으로서의 외국인 인식.....	7
--------------------------	---

1. 입국에 대한 검사.....	9
-------------------	---

2. 호구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13
------------------------	----

II. 행적 및 거주에의 통제.....	17
-----------------------	----

1. 내지에서의 이동 및 행적에 대한 통제.....	18
------------------------------	----

2. 장기 거주에 대한 통제.....	23
----------------------	----

III. 사례를 통해 본 정책 시행의 실태.....	29
------------------------------	----

1. 강제점거에 대한 처벌.....	31
---------------------	----

2. 명의도용에 대한 처벌.....	38
---------------------	----

3. 한인들의 반응.....	42
-----------------	----

結論.....	47
---------	----

부록

참고문헌

中文概要

부록순서

1. 管轄在華外國人實施條例.....	52
2. 各國舊約已廢新約未訂前所適用的臨時辦法.....	56
3. 無約國人民管理章程.....	58

序 論

일찍부터 외국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였던 중국은 외국인들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중국에 머무르는 외국인들도 늘어나자 그 관리정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唐代 蕃坊이나 夷館과 같은 외국인들의 집단 거주지를 설정하여 그들을 관리하였다.¹⁾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문화나 종교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일정 지역으로 거주를 제한하는 등²⁾ 이들에 대한 자국의 통제력을 일정 정도 발휘하려 하였던 것이었다. 이후에도 중국 정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특별한 소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중국 내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던 외국인들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였다.³⁾

19세기 중기 아편전쟁 이후 상황은 바뀌었다. 중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서구 열강들과 領事裁判權 · 關稅協定 · 沿海貿易 · 內河航行 · 駐兵 · 租界 · 租借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였다.⁴⁾ 이를 통해 조약 체결국의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중국의 사법권 · 행정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우월한 지위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통행 ·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⁵⁾ 그 결과, 정부는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연루된 사회

1) 康大壽, 「古代中國對在華外人的法律管理」, 『信陽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7-3(20卷); 이밖에 唐代 중국에 거주하던 외국인 사회나 그 관리에 대한 중국 측의 연구로는 邱樹森, 「唐宋 “蕃坊” 與 “治外法權”」, 『寧夏社會科學』2001-5.; 賴存理, 「唐代 “住唐” 阿拉伯, 波斯商人的待遇和生活」, 『史學月刊』1998-2.; 등이 있다. 이 이외에 한국 측의 연구로는 金相範, 「唐代 後半期 揚州의 發展과 外國人社會」, 『中國史研究』第48輯, 2007.; 朴漢濟, 「唐代 長安의 空間構造와 蕃人生活」, 『동아시아 역사의 還流』, 서강대학교 동양사연구소 역음, 지식산업사, 2000.; 崔在榮, 「唐 前期 長安內의 소그드人 대책」,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논집』23, 1999. 등이 있다.

2) 康大壽, 위의 논문, p.100.

3) 劉五書, 「開封猶太人生活習俗考」, 『河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1994-1(總34卷).

4) 박제균, 「중국국민당의 당국체제와 국민국가 2 : 중국국민당의 민족주의 이념과 “혁명외교”」, 『中國近現代史研究』31, 2006, p.61.

5) 외국인이 중국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조약에 최초로 보인 것은 1842년 8월 영국과 체결한 《南京條約》으로 第二條에서는 개항장에서 외국인과 가족의 일시 거주를 인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王鐵崖 編, 『中外舊約章彙編』第一冊, 三聯書店, 1957, p.31.; 중국에 거주하는 의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도 그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한편 계속되는 외국의 침략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영토가 과분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아져갔고,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공동체로서의 ‘국민국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관료 체계의 합리화, 재정 개혁, 군대 재편, 법제 확립을 바탕으로 한 근대 국가 권력(State making)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근대적 인간이면서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춘 국민의 형성을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⁶⁾ 중국정부는 그것의 실천을 위하여 국민의 범위를 한정하는 국적법을 제정하였다.⁷⁾

한편 이 과정에서 외국인은 ‘국민’이 아닌 타자로서 보다 명확히 규정되어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중국정부는 각지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들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시작하였다. 광서 연간부터 수도였던 베이징에서 경찰업무를 담당했던 內外城巡警總廳에서는 관내의 행정 및 범죄와 관련된 외국인들의 숫자를 조사하여 기록한 통계보고서⁸⁾를 작성하였다. 통계보고서에는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 그들이 연루된 소송안건의 발생 빈도

국민의 생활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은 다음해 10월에 체결한 《虎門條約》에서 나타난다. 第四條에서는 개항장으로 한정된 영국인의 중국 내 거주 및 통상행위를, 第六條에서는 규정된 지역 이외의 내지 통행 제한, 第七條에서는 개항지에서의 영국인에 대한 대우, 그리고 第九條에서는 범죄에 연루된 영국인의 처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虎門條約》王鐵崖 編, 위의 책, pp.34-39 참조

- 6) 林相範, 「‘民’에서 ‘國民’으로 - 5·4運動期 北京地域을 中心으로 -」, 『中國近現代史研究』 2, 1995, p.53.
- 7) 중국에서 최초로 국적법이 공포·시행된 것은 宣統 元年(1909년)의 일이다. 이 국적법은 ‘大清國籍條例’ 및 ‘大清國籍條例試行細則’으로 이루어져 있다. ‘大清國籍條例’는 전부 5장 24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國有籍(제1조~제2조)에서는 중국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入籍(제3조~제10조)에서는 중국으로의 귀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出籍(제11조~제18조)에서는 중국의 국적 이탈에 관한 내용을, 제4장 復籍(제19조~제23조)에서는 중국의 국적을 이탈한 사람이 다시 중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 附條(제24조)에서는 이상의 규정을 즉시 시행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해에 정해진 국적법은 한 인간이 자국의 구성원이 되는 원칙을 정했으며, 국적의 취득이나 상실 및 그 수속과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중국에서 최초로 ‘국민’의 경계를 확정한 근대법이었다. 鄭址鎬, 「清末 國籍法制定과 ‘國民’의 境界」, 『中國史研究』 52, 2008, pp.156-157.
- 8) 內外城巡警總廳 編, 「內外城巡警總廳統計書」光緒32年(1906年).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통계를 내어 표로 작성하였는데, 이는 모두 만약을 대비하기 위한 초보적인 작업의 일환이었다.

국민국가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구하였던 남경국민정부는 국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정부는 다양한 법령을 반포하고, 행정적 조치들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통제도 더욱 강화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남경국민정부의 외국인 관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의 연구를 찾아보았다. 한국에서 開港 이후 중국 내 거주했던 외국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上海를 비롯한 조계지역으로 한정되어 조계사회 내부 구성이나 통치 기구의 특징,⁹⁾ 그리고 조계 사회를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시각¹⁰⁾에 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계지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있던 외국인들에 대한 연구가¹¹⁾ 이루어져 왔다. 또한 서양에서는 주로 불평등조약의 결과물인 치외법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던 자국민들에 대한 연구가 주로 법률사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왔을 뿐¹²⁾ 중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

9) 李昇輝, 「五卅事件과 上海 公共租界 工部局」, 『中國近現代史研究』 21, 2004 ; 金泰丞, 「1930年代 以前, 上海 公共租界의 支配構造와 華人參政運動」, 『東洋史學研究』 58, 1997.

10) 손재현, 「프랑스의 租界 확장에 대한 天津 시민의 대응 - 1916년 老西開사건을 중심으로 -」, 『大丘史學』 76, 2004.

11) 중국내 거주하던 외국인에 대한 연구 專著들도 많이 나왔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劉爽, 『哈爾濱猶太僑民史』, 方志出版社(北京), 2007. ; 宋安娜, 『神聖的渡口 猶太人在天津』, 天津人民出版社(天津), 2007. ; 潘光, 『猶太人在中國』, 五洲傳播出版社(北京), 2005. ; 張鐵江, 『揭開哈爾濱猶太人歷史之迷 哈爾濱猶太人社區考察研究』, 黑龍江人民出版社(哈爾濱), 2005. ; 曲偉·李述笑主編, 『哈爾濱猶太人』, 社會科學文獻出版社(北京), 2004. ; 唐培吉 等, 『上海猶太人』, 三聯書店(上海), 1992. ; 潘光旦, 『中國境內猶太人的若干歷史問題』 北京大學出版社(北京), 1983. ; 石方, 『哈爾濱俄僑史』, 黑龍江人民出版社(哈爾濱), 2003. ; 李興耕, 『風雨浮萍 俄國僑民在中國(1917-1945)』, 中央編譯出版社(北京), 1997. ; 汪之成, 『上海俄僑史』, 三聯書店(上海), 1993. ; 孫科志, 『上海韓人社會史研究』, 學苑出版社(北京), 2004.

12) Benj. H. Williams, "The Protection of American citizens in China : Extraterritoriality",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6 No. 1, January 1922. ; Benj. H. Williams, "The Protection of American Citizens in China : Cases of Lawlessnes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7 No.3, July 1923. ; Edmund S. K. Fung, "The Chinese Nationalists and the Unequal Treaties 1924-1931", *Modern Asians Studies*, Vol. 21 No. 4. 1987. ; Xu Xiaoqun, "The Fate of Judicial Independence in Republican China, 1912-37", *The China Quarterly*, No.149, March 1997.

고,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남경국민정부 시기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들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1928년(民國17年) 6월 21일 국민정부는 수도를 南京으로 이전하고 北京을 北平으로 개명했다.¹³⁾ 역대 왕조의 수도였던 베이징은 북방의 핵심 도시로 국가권력의 통제가 비교적 철저하게 작용되었다. 그러나 남경국민정부의 설립을 계기로 베이징은 수도의 위치에서 벗어나 좀더 다양한 영역에서 근대적인 의의를 지닌 다양한 시정이 시행될 수 있는 무대로 바뀌게 되었다.¹⁴⁾ 또한 1858년 영국과 체결한 天津條約에서 외국의 관원과 그 가족들의 베이징 내 거주 및 이동을 인준한 이후,¹⁵⁾ 베이징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점차 증가하였다. 남경국민정부는 이러한 외국인들 또한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규정들을 제정하여 그들을 통제 하에 두기 위해 각종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관리 정책의 실시 또한 그 시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경국민정부가 중국 내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에서도 특히 ‘행적에 대한 파악과 주거지에 대한 제한’이라는 문제에 주목해보았다. 외국인이 원래 머물고 있던 베이징 시 내부에서 이동하거나, 혹은 외부로 나가자 하는 움직임 모두가 경찰의 관리 대상이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사소한 움직임마저도 파악하고자 한 것은 외국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설정한 중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주거지 문제는 외국인이 베이징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13) 청나라 시기 베이징은 京師로 불리었다. 1912년 袁世凱가 中華民國의 총통에 취임하면서 北京으로 고쳤다. 1927년 수립된 南京國民政府에 의해 北平으로 고쳐졌다가, 1949년 10월 1일 中華人民共和國이 수립되면서 다시 北京으로 고쳐졌다. 본 논문에서는 인용문이나 사료 상에 나타나는 북평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쓰되, 다른 일반 부분에는 베이징으로 사용하겠다.

14) 尹鈞科 外, 『古代北京城市管理』, 同心出版社(北京), 2002年, p.179.

15) 이전까지의 체결한 조약들에서는 외국인의 장기 거주는 통상항구 이내로만 제한되어있었다. 조약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王鐵崖 編, 『中外舊約彙編』第一冊, 三聯書店, 1957.을 참조.

한편 본고는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외국인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한인들에게 주목해보고자 한다. 1882년 체결된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통해 한인들이 베이징으로 이동하여 상업행위를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준된 이후,¹⁶⁾ 베이징으로의 한인들의 이주는 급증하였다.¹⁷⁾ 1930년대가 되면,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숫자는 일본인과 함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숫자가 늘어났다. 한인이 외국인들 가운데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1910년 이후 이들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된 일본이 중국으로 점차 세력을 확대해가고 있었다는 점은 중국정부로 하여금 외국인 관련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한인들에 더 주목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중국의 외국인 관리 정책에 있어 그 외국인이 속한 국가와 중국과의 관계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상황에서 한인들의 특수한 상황은 또한 정부의 관리 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중화민국사당안자료회편(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와 『민국법규집성(民國法規集成)』, 그리고 『북평시경찰국업무보고(北平市警察局業務報告)』에 실려 있는 외국인관련규정들을 주사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 자료집들은 외국인 관리에 대한 남경국민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법적 장치들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고는 베이징시당안관(北京市檔案館)에 남아있는 당시 외국인에 대한 초보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들이 남겨놓은 北平市公安局 檔案들 가운데 한인 관련 檔案들을 활용하고자한다. 경찰은 시민의 기층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특히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

16) 《朝鮮王朝實錄》高宗實錄 19年(1882年) 10月 17日 庚午條.

17) 베이징으로 많은 수의 한인들이 몰리게 된 이유로는 우선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경제적인 이점이 있었으며, 일본의 경찰권이 직접 미치지 않아 일본영사관의 직접적인 제제를 받지 않는다는 유리한 점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1920년대 전반 일본 공사관은 베이징에 天津領事館警察署를 설치하였으나 한인 민족운동을 직접 단속할 取締權은 없었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파출소를 天津領事館警察分署 내지 警察署로 격상시키고자 하였지만 중국의 반대로 성사되지는 못했다. 일제는 일방적으로 공사관 경찰들로 하여금 독립운동인사를 체포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국과 일본 간에 베이징 한인에 대한 체포와 재판권을 둘러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孫艷紅, 「1920년대 전반 북경지역 한인의 생활상과 민족교육」, 『北岳史論』 10, 2003. ; 同, 「1910~1920년대 중반 북경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의 특징」, 『한국근현대사연구』 30, 2004.

하였던 外事警察은 전문 경찰의 하나로 설치되어 중국에 온 외국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의 주권과 사회의 안녕 ·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¹⁸⁾ 특히 이들이 남긴 한인과 관련된 당안 문건에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에 접수되고 심문 · 조사 · 1차 처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들이 사회 하층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한인들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역추적 할 수 있는 사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남경국민정부가 이방인으로서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남경국민정부의 ‘근대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8) 韓延龍 主編, 『中國近代警察制度』,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北京), 1993, p.627. ; 外事경찰은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다루었기 때문에 특히 국내법 · 국제법 · 국제정세 · 조약 등에 대해서 반드시 상당한 이해가 요구되었고,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만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과 직접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에 대한 검정은 外事경찰 선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었다. 베이징 지역 外事경찰의 경우에는 일어 · 영어 · 러시아어에 능통한 자가 우선적으로 선발되었다. 趙炳坤, 『中國外事警察』, 商務印書館(上海), 1935, pp.2-3. ; 베이징 지역에서의 外事경찰에 대한 업무는 1914년(民國3年)에 京師警察廳의 관제를 새롭게 개편하는 과정에서 總務處 · 行政處 · 司法處 · 衛生處 · 消防處의 다섯 개의 處를 두었는데, 그 가운데 행정처에서 外事, 즉 외국인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하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京師警察廳官制》民國3年 8月 30日, 蔡鴻源 主編, 『民國法規集成』第七冊, 黃山書社, 1999, p.114. ; 남경국민정부 성립 이후, 수도경찰에서 지방 경찰로 그 지위가 격하되면서, 시정부 소속의 公安局 第二科에 교통科(交通股)에서 外事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趙炳坤, 위의 책, p. 114. ;

I. 관리 대상으로서의 외국인 인식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불평등조약을 폐지하려는 노력은 베이징 정부 때부터 있어왔으나, 더욱 본격화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남경국민정부 시기로 들어오면서부터이다. 남경국민정부는 성립직후부터 과거의 불평등조약을 폐지하고 자국 내 외국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중국의 법률을 적용할 것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¹⁹⁾ 1929년(民國18年)과 1930년(民國19年)에는 행정원(行政院) 및 사법원(司法院) 등의 관할부처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문서들을 주고받으면서 입장을 정리해나갔다.²⁰⁾ 또한 그 다음해에는 외교부(外交部)에서 중국 내에 있는 외국인을 관리하는 데 있어 실시할 조례들을 제정하여 반포하기도 하였다.²¹⁾

남경국민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관리 정책을 제정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인식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마땅히 자국 법률과 행정권의 관할 하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통치권이 완전한 국가는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민이 마땅히 본국 인민과 마찬가지로 머무르고 있는 국가 법률의 지배 및 사법기관의 관할을 받는 것이 국가 고유의 요소이며,²²⁾ 이는 국제공법이 확정한 바뀌지 않는 원칙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

19) 「國民政府廢除舊約宣言(1928年 6月 15日)」, 「外交部關於重訂新約的宣言(1928年 6月 15日)」,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第五輯 第一編, 江蘇古籍出版社, 1991, pp.33-34.

20) 중국통치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비록 영사재판관이 있더라도 마땅히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법을 근거로 하여 반포하는 법령·규장(規章) 등을 준수해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실제 외국인들에게 적용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는 내용들이었다. 「國民政府文官處爲在華外人一律適用中國法律致行政院公函(1929年 12月 30日)」, 「司法院爲在華外人一律適用中國法律的咨文(1930年 1月 4日)」,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第五輯 第一編, 江蘇古籍出版社, 1991, pp.53-54.

21) '중국에 있는 외국인을 관할하는데 실시하는 조례(管轄在華外國人實施條例)'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 「外交部爲擬訂管轄在華外人實施條例致行政院呈文」,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第五輯 第一編, 江蘇古籍出版社, 1991, pp.64-65.

22) 「國民政府特令(1928年 12月 28日)」,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第五輯 第一編, 江蘇古籍出版社, 1991, p.52.

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중국이 열강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고 영사재판권의 속박을 받아 온 이래로 국가 法權이 외국인들에게 미치지 못하면서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경험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고자 한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외국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선 외국인이 속한 국가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외국인을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조약을 체결한 외국인(有約外國人), 舊約이 이미 폐기되었으나 새로운 조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외국인(舊約已廢新約未訂之外國人), 그리고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인(無約國人)으로 구분하였다. 조약 체결 여부, 그리고 체결한 조약의 성격에 따라 治外法權의 유무가 결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류 방법에 따라 외국인이 어떤 상황에 속해있느냐는 곧 그 외국인에 대한 관리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조약을 체결한 국가로는 기존의 만청정부 그리고 군벌정부시기 중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와, 남경국민정부 성립 이후에 새롭게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있었다. 기존에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규정된 치외법권적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가 있었다.²³⁾ 이에 남경국민정부는 성립 이후에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국가의 인민이 중국에 거주할 경우 중국 정부와 사법 당국의 관할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²⁴⁾ 뿐만 아니라 각 조약에서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의 인체 및 재산에 관할권은 소재국가의 법률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차별성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구약이 이미 폐기되었으나 새로운 조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국가라 함은 원래 벨기에 · 덴마크 · 포르투갈 · 이탈리아 · 스페인 · 일본 · 스웨덴 7개 국가를 가리켰다.²⁵⁾ 이들 국가들은 시간이 지나서 그 효력이

23)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었다.

24) 1929년 9월 그리스와 체결한 《通好條約》, 1930년 5월 체코슬로바키아와 체결한 《友好通商條約》, 1936년 8월 라트비아와 체결한 《友好條約》 등에서 알 수 있다.

25) 1928년에 벨기에 · 덴마크 · 포르투갈 · 이탈리아 · 스페인의 5개국은 각각 《友好通商條約》을 체결하면서 중국에 있는 인민은 마땅히 중국 법률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附件에 중국 법률이 제대로 운용될 때까지는 영사재판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다가 중국의 사법상황이 성숙해지는 때가되면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일본은 1896년의 《中日通商行船條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누리고 있던 영사재판권 등의 특권을 여전히 누리하고자 하였다. 1928년(民國17年) 7월 9일에 정부는 중국과 외국이 맺은 조약이 이미 폐기되고, 새로운 조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임시방법(各國舊約已廢新約未訂前所適用的臨時辦法) 7조를 반포하여 적용하고자 함으로써,²⁶⁾ 이들에 대한 관리 의지를 나타내었다.

무약국인(無約國人)은 중국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사람이다. 일찍이 1919년(民國8年) 4월에 반포한 대총통령에서는 중국 내에 있는 무약국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들의 중국 경내에서의 모든 과세와 소송 등의 사항에서 일률적으로 중국 법률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²⁷⁾ 또한 같은 해에 무약국인민관리장정(無約國人民管理章程)과,²⁸⁾ 그 시행세칙(無約國人民管理章程施行細則) 등을 반포하기도 하였다.

외국인이 속한 본국이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른 이러한 분류 방법의 설정은 외국인을 관리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남경국민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1. 입국에 대한 심사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입국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교통이 발달하고 국가 간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국제 분쟁 또

約》과 1903년의 《通商行船續約》에서 영사재판권을 규정한 이후, 여전히 그대로 계승하여 누리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으며, 스웨덴은 1908년에 체결한 《通商條約 第十款》에서 규정하기를 각국이 모두 영사재판권을 포기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영사재판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누리기가 일쑤였다.

26) ‘과거에 중국과 체결한 조약이 이미 폐기되고, 새로운 조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임시방법(各國舊約已廢新約未訂前所適用的臨時辦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조. 程道德 外編, 『中華民國外交史資料選編1919-1931』, 北京大學出版社(北京), 1985, p.456.

27) 趙炳坤, 『中國外事警察』, 商務印書館(上海), 1935, p.33.

28) ‘무약국인민관리장정(無約國人民管理章程)’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3] 참조. 蔡鴻源 主編, 『民國法規集成』 18, 黃山書社, 1999, pp.48-52.

한 심각해져가자, 각국에서는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호조제도(護照制度)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에서 護照가 증명서의 일종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청대 후반의 일이었다. 그러나 신분에 대한 증명보다는 휴대하고 있는 위험물품에 대하여 정부의 관련 부서 혹은 기구에서 발급한 통행허가증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護照가 오늘날과 같이 ‘여권’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1930년 8월 行政院 外交部에서 1930년(民國19年) 8월 《查驗外人入境護照規則》과 그 시행세칙을 정식으로 반포하면서 중국인들에게 護照를 발급해주고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護照 소지 여부도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²⁹⁾ 《查驗外人入境護照規則》과 그 시행세칙에는 중화민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 별도로 지정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령 및 조약에 따라 일괄적으로 입국 시 護照를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³⁰⁾

현재와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들은 護照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護照를 발급받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영사관 혹은 대사관의 사증(查證)[簽證]을 거쳐야만 타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했다. 이때 護照에는 본인의 성명 · 성별 · 나이 · 본적 · 주소지 · 직업 · 입국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사진 또한 첨부되어 있어야 했다.³¹⁾ 이러한 과정은 신청인의 신분을 분명하게 확인한 정부가 그 신원을 보증해 주는 절차였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과한 사람만이 소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護照였으며, 이를 토대로簽證이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입국 시 護照 검사는 외국인이 입국 후에 최초로 도착한 장소에서³²⁾ 그 신분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제복과 휘장을 착용한 검사원들에 의해

29) 薛理勇, 「中國護照的起源」, 『史卷拂塵』2007-3, p.47. 「查驗外人入境護照規則」에 대한 내용은 蔡鴻源 主編, 『民國法規集成』第44冊, 黃山書社, 1999, p.62.을 참조.

30) 「查驗外人入境護照規則 第一條」, 위의 책, p.62.

31) 「查驗外人入境護照規則 第二條」, 위의 책, p.62.

32) 외국인 입국 시 護照에 대한 검사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① 陸路 : 滿洲里, 綏芬河, 琿春, 延吉, 哈爾濱, 全州, 張家口, 綏遠, 伊犁, 喀什葛爾, 塔城, 九龍(水路와 동시에 함), 前山, 東興, 騰越, 思茅, 蒙自, 河口, 龍州. ② 水路 : 廣州, 北海, 三水, 江門, 中山港, 汕頭, 廈門, 福州, 吳淞(상하이를 거치지 않고 장강으로 들어온 자들은 이곳에서 검사받음), 靑島, 煙臺, 龍口, 威海衛, 天津 혹은 塘沽, 秦皇島, 葫蘆島, 營口, 安東(兼陸路), 愛琿, 大黑河, 東江. ③ 航空路는 공항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처음으로 도착하는 육지에서 검사하도록 하였다. 蒙藏과 같은 변경지역의 검사 지점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세관 등에 협조를 위탁하여 함께 처리할 방법을 의논하여 정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였다.³³⁾ 배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시행하는 심사에 대해서도 1935년(民國24年) 通令을 내려 각 지역의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여객들을 수송하는 사업체에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³⁴⁾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그 입국에 제재가 가해지도록 하였다. 입국금지 사유로는 護照를 휴대하지 않았거나 검사에 저항하며 협조하지 않는 자, 소지하고 있는 護照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조된 것이거나 護照에 명기된 이름과 다른 자, 부랑자 혹은 거지, 금하는 물품 혹은 풍속에 저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일찍이 안전으로 인하여 추방의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되었다. 또한 행동이 당과 국가의 이익에 위배되거나 공공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입국 금지 사유에 포함되었다.³⁵⁾ 護照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면 즉시 주관부서의 장관에게 알려져 검토하여 지시가 내려지기를 기다려야 했으며, 해당 외국인을 잠시 구류하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입국을 보류시키도록 하였다.³⁶⁾ 또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외국인이 자력으로 중화민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각 해당 외국인 본국의 주중국 영사에게 알려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³⁷⁾

검사를 마친 검사원은 護照에 검사를 한 날짜 도장을 찍어서³⁸⁾ 이 외국

은 별도로 규정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각 관계기관에 보고를 한 후 검사 지점을 증설할 수도 있었다. 「查驗外人入境護照規則施行細則 第三條」, 위의 책, p.63.

33) 중앙의 주관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인원을 파견하여 호조 검사에 대한 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었다. 「查驗外人入境護照規則 第三條」, 위의 책, p.62.

34) 각 여객선 회사에서는 출발하기 전 표를 판매할 때에도 반드시 여객이 소지하고 있는 護照 등을 통해 수속이 완비되었는지를 조사한 이후에야 표를 주어야 했다. 항구에 도착하면 탑승객 명단을 해관에 제출하여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했다. 만약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관에서는 ‘海關責令’에 의거하여 명단을 압수할 수도 있었다. 또한 여객 가운데 護照 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마땅히 그 입국은 저지되어야만 했으며,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경우에 해관에서는 그 여객이 소지하고 있던 짐에 대하여 구류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 趙炳坤, 위의 책, p.80.

35) 「查驗外人入境護照規則 第四條」, 위의 책, p.62.

36) 「查驗外人入境護照規則 第五條」, 위의 책, p.62.

37) 「查驗外人入境護照規則施行細則 第四條」, 위의 책, p.63.

38) 「查驗外人入境護照規則施行細則 第十一條」, 위의 책, p.63.

인이 입국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였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검사원은 또한 매달 10일이 되기 이전까지 지난달에 입국을 한, 그리고 입국에 제지를 당한 외국인의 성명 · 성별 · 본적 · 직업 · 주소지 및 사유를 적어 포로 작성하여 지방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³⁹⁾ 지방정부에서는 또한 이를 따로 주관 부서인 외교부에 별도로 보고함으로써⁴⁰⁾ 외국인 관리에 효율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護照 검사는 국경에서 입국할 때 한 차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내지 지역의 행정관서에서도 수시로 護照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⁴¹⁾ 행정관서에서 그 지역을 통과하던 외국인의 護照를 검사하다가 입국 제재 사항이 있었음을 발견하거나, 휴대한 護照에 입국 심사가 끝나는 대로 찍히는 검사완료 도장이 없는 경우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을 잠시 동안 구류하고 주관부서의 장관에게 보고하여 처리 방법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였다.⁴²⁾

품행이 난잡한 외국인이 일단 입국을 하면, 그 직업이나 행동 등등 모든 것이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필연적이다.⁴³⁾ 이에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중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해주고 있는 護照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통해 입국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위해를 사전에 막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자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입국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내에 머물게 되는 외국인 전체에 대한 관리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39) 「查驗外人入境護照規則施行細則 第十二條」, 위의 책, p.63.

40) 「查驗外人入境護照規則施行細則 第十二條」, 위의 책, p.63.

41)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入境 심사 또한 「查驗外人入境護照規則」을 근거로 처리하였다. 趙炳坤, 앞의 책, p.128.

42) 「查驗外人入境護照規則施行細則 第六條, 第七條」, 앞의 책, p.63.

43) 趙炳坤, 위의 책, p.79.

2. 호구조사를 통한 외국인 현황 파악

일단 중국 내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은 자국민들에 대한 호구 조사⁴⁴⁾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내무부에서 1915년(民國4年) 8월 《警察廳戶口調查規則》과 《縣治戶口編查規則》을 공포하긴 했었지만, 체계적인 인사등기까지 시행하지는 못했다. 남경국민정부는 성립 직후인 1928년(民國17年) 7월 19일 《戶口調查統計報告規則》을, 다음해 1월에는 《人事登記暫行條例》를, 그 다음해인 1930년(民國19年) 12월에는 《戶籍法》을 반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호적조사 및 인사등기 실시체계를 마련하였다. 이 호적법은 이후의 호적 및 인사 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다. 縣과 市가 호적 적별(籍別)의 단위였으며, 縣의 鄉 · 鎮 구역 및 市의 坊 구역을 그 관할구역으로 하였다.⁴⁵⁾ 호적 관할 구역 내에는 호적주임(戶籍主任) 한 사람과 호적원(戶籍員) 약간 인을 두어 호적 및 인사등기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⁴⁶⁾

호구조사는 우선 편정문패(編訂門牌)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호구를 기준으로 1차 조사를 실시했다. 호주(戶主)와 호객인구(戶客人口)의 성명과 성별 · 혼인 여부 · 자녀 유무 · 연령 및 본적 · 생년월일 · 국민당 가입 여부 · 거주 기간 · 직업 및 종교 · 교육 정도 · 질병 유무 · 戶内の 客人과 호주의 친속 관계와 호칭 · 고용인(傭工)

44) 선거 · 교육 · 징병(徵兵) · 노인 부양 및 육아 · 이주 및 개간 · 실업에 대한 구제 · 직업에 대한 조정 등과 같은 사회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모두 호구조사와 인사등기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호구조사와 인사등기는 일국의 내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陳允文, 『中國的警察』, 商務印書館(上海), 1934, p.105.

45) 「戶籍法 第二條」, 「戶籍法 第三條」, 戴鴻映, 『舊中國治安法規選編』, 群眾出版社(北京), 1985, p.307.

46) 호적주임 및 호적원은 공안국과 그 소속직원, 혹은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겸임하였다. 1934년 이전까지 중화민국 호구조사와 인사 등기의 주된 업무는 경찰 측에서 담당하였다. 경찰이 해당 관할 구역 내의 사람과 물자 및 일절의 상황에 대하여 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해 호구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요긴한 업무라 할 수 있다. 趙志嘉, 『長警的實際教育』, 上海警察學社出版(上海), 1933, p.63.

과의 관계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였다.⁴⁷⁾ 호적주임은 이를 토대로 호적등기부와⁴⁸⁾ 인사등기부를⁴⁹⁾ 작성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계절별 및 연도별로 내무부로 보고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호구가 이전 조사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경우, 좀 더 분명한 사유를 밝히고 다시 기록하여 분명하게 표기해 두도록 하는 등 세밀한 주의를 기울였다. 2차 조사(覆査)에서는 1차 조사 시에 발생했던 오류에 대한 점검 및 수정이 이루어졌다.

호구 조사의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피조사인에게 직접 물어서 실시하는 직접조사, 주의의 사람들에게 물어 그들의 대답을 통해 생활 수준이나 재정상황 · 수입정도 · 직업 상황 · 소행의 합법성 정도 등을 파악하였던 간접조사, 그리고 일정한 때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직간접 조사에서 부족하였었다고 판단한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였던 수시조사의 방법이 있었다.⁵⁰⁾

정부는 조사과정에서 불안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자들에 대해서 별도의 등기를 작성하고, 수시로 조사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주로 과거에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소행이 부정한 자, 행적이 의심스러운 자, 소득이 없음에도 호의호식하는 자, 성정이 불량하다고 소문난 자와 같은 사람들의 출입 및 그가 누군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거짓으로 가정 경제의 빈부를 속인 자, 수입이 없는 자, 낭비가 심한 자, 가족이 아닌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자, 학생과 노동자들이 한 집에 모여 사는 경우가 그 대상이었는데, 이러한 자들을 특히 수시로 사건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자들로 인식하였던 것이다.⁵¹⁾ 이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47) 趙志嘉, 위의 책, p.64.

48) 통계보고 시 작성해야 하는 호적등기부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본적 및 기류적(寄籍) 호수인구의 성별, 연령 ② 남녀 출생 및 그 부모의 연령과 직업 ③ 남녀의 사망 및 그 연령과 직업, 그리고 사망원인 ④ 사산 및 성별과 원인 ⑤ 결혼과 이혼에 이른 남녀 및 그 직업과 연령 ⑥ 남녀의 직업 ⑦ 사망선고가 이루어진 사건 ⑧ 호적 변경 ⑨ 동일한 호적 관할 구역 내에서의 이주 ⑩ 교거 중인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국적

49) 인사등기부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했다. ① 출생 ② 입양 ③ 수양 ④ 결혼 ⑤ 이혼 ⑥ 감호 ⑦ 사망 ⑧ 사망선고 ⑨ 상속

50) 수시조사는 수시로 변동하는 가정 내의 상황에 대해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다. 가족이나 친척끼리 서로 교류하는 상황, 가까운 이웃에서 수시로 들리는 소문, 교제하는 인물 등과 같은 사항들을 수시로 조사를 해야 하는 항목들로 간주하였다. 趙志嘉, 위의 책, p.65.

51) 趙志嘉, 위의 책, p.65.

대해서는 수색을 진행할 수 있었다.⁵²⁾ 또한 3개월 이내에 이주해 온 호에 대해서는 그 내력 · 이전 거주지 · 이주해 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게 검문하도록 규정하였다.⁵³⁾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상술한 호구 조사 방법은 중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되었고, 베이징에도 마찬가지였다. 호구 조사 과정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을 발견할 경우에는, 호구 조사의 항목을 직접 묻는 방법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⁵⁴⁾ 조사 후에는 별도로 책자를 작성하여 상부로 보고하였다. 이를 보고받은 중앙 정부에서는 해당 구역 관할 경찰서에 파악된 외국인들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였다.⁵⁵⁾

호구조사에서 파악된 외국인들의 현황은 통계보고서로 작성되어 중앙정부에 보고되었다.⁵⁶⁾ 특히 베이징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에 대해 작성된 통계보고서 작성은 1906년(光緒32年)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각 구의 경찰서에서는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성별 · 숫자 · 직업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년 단위로 통계를 작성, 기록하여 중앙으로 보고하였다. 통계보고서에는 거주 중인 외국인 전체 인구 수 · 구(區)별 인구 수 · 총 호구(戶口) 숫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 ·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분류 · 외국인이 연루되어 발생한 분쟁의 유형 · 외국인의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사건의 발생 빈도 · 事故 유형 · 北平 내 거주 기간 등의 세분된 항목들이 기록되어 있었다.⁵⁷⁾

52) 특히 한인 호구에 대하여 수색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의 헌병이나 경찰에 함께 처리하는 협동을 요청할 수 있었다. 北平市公安局, 『北平市政府公安局業務報告』 1933년(民國22年), p.70.

53) 「北京特別市公署警察局臨時普遍調查戶口辦法」, 『北京特別市公署警察局業務報告』, 民國27年.

54) 趙炳坤, 위의 책, p.142.

55) 趙志嘉, 위의 책, p.66.

56) 경찰에 의해 작성된 외국인 관련 보고서는 당시 수도였던 베이징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작성되었을 것이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역은 베이징이므로 이곳에서 작성된 통계 보고서만을 언급하겠다.

57) 신해혁명 이전까지 베이징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 외국인의 숫자는 506명(光緒33年) - 548명(光緒34年) - 729명(선통3年)으로 기록되어있다. 內外城巡警總廳 編, 『北京內外城巡警總廳第一次統計書』, 光緒34年, 『北京內外城巡警總廳第二次統計書』, 光緒34年, 『北京內外城巡警總廳第三次統計書』, 光緒34年, 京師警察廳 編, 『京師內外城巡警總廳第三次通計書』, 光緒34年, 『(宣統元年~宣統三年)京師內外城巡警總廳通計書』, 1916年.

남경국민정부시기에는 상술한 항목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주택 임대 수 ·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본국별 숫자 · 무약국인(無約國人) 및 무국적인(無國籍人) 여행 허가증 발급 신청 수 · 무약국인(無約國人) 및 무국적인(無國籍人)의 거류 허가증 발급 신청 수 또한 통계를 작성, 기록하였다.⁵⁸⁾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신상 조사나 거주하고 있는 상황 등의 정적인 상태에 대한 관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동적인 움직임까지도 관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었을 알 수 있다.

입국에 대한 제재와 호구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과정을 통해 남경국민정부는 외국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확실하게 설정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들을 확정하고 시행에 나서게 된다.

58) 北平市政府公安局 編, 『北平市政府公安局施政統計表』, 1935년(民國24年).

II. 행정 및 거주에의 통제

1842년 8월 영국과 체결한 《南京條約》에서 외국인의 거주를 개항장 이내로만 제한하기 시작한 이래로, 외국인의 이동 및 거주 등 일체의 행위는 모두 개방된 통상 구역 이내로만 한정되었다.⁵⁹⁾ 그러다가 1858년 영국과 체결한 天津條約에서 외국 관원과 그 가족들의 베이징 내 거주 및 수시 이동을 인준하기 시작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외국인의 합법적인 거주 및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⁶⁰⁾ 그러나 조약에서 규정한 바와는 다르게, 암암리에 베이징에 와 있던 외국인의 숫자가 이미 상당수에 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⁶¹⁾

중국 정부는 이를 묵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각국 공사관들과 교섭을 통해 외국인들을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민국 시기에 들어와서도 베이징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중국의 法權을 복종하고 정해진 다양한 법규들을 준수하면서 살아간다면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⁶²⁾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하여 모색하였다.

남경국민정부 또한 베이징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겪는 다양한 방면을 규제할 각종 정책을 내놓았다. 베이징 외 지역으로의 이동 · 장기 거주를 위한 가옥 임대 · 선교 행위 · 잡지 및 신문 등 간행물 발간 · 저작권

59) 조약 내용에 대해서는 王鐵崖 編, 『中外舊約彙編』 1, 三聯書店, 1957.을 참조.

60) 그러나 일반인들의 통상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咸豐8年(1858년)에 체결한 《中英通商章程 先後條約》의 第8款에는 “친진조약에서 체결한 영국인민이 증명서를 소지하고 내지로 이동해 통상할 수 있다고 명기하였지만, 수도는 통상의 예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中英通商章程 先後條約》의 내용은 王鐵崖 編, 『中外舊約彙編』, 三聯書店, 1957, p.118. 참조.

61) 「1934年北平市政府關於對僑居北平外國人行使警察權的密令(J181-020-13140 北平市公安局關於查僑居市外人是否有領事裁判權應遵守警章的密令)」, 『北京檔案史料』 4, 2003, pp43-44.

62) 民國 元年 9月 16日에 내린 公文에는 “京師 내외성 지역 및 비통상구역에서 조약에 의거하여 각국의 상민들이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임의대로 가게를 개설할 수 없게 하며, 이미 개설되어 있는 가게들에 대해서는 폐업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지정한 규정들을 잘 준수하도록 지도하며, 다른 가게가 개설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934年北平市政府關於對僑居北平外國人行使警察權的密令(J181-020-13140)」, 『北京檔案史料』 4, 2003, p.48.

· 신문 기자와 같은 언론직 취업 · 무기 소지 · 수렵 · 중국인 노동자 고용 · 지도 제작이나 사진촬영 · 광산 채굴 · 전등 및 전화의 설치 등의 소소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세한 警章들을 제정했다. 이는 보통의 외국인들이 베이징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인 소소한 행위들까지도 통제의 대상으로 두고자 하였던 남경국민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베이징 이외의 지역으로의 이동과 장기거주를 위한 가옥 임대’ 문제에 주목해보았다. 외국인 및 자국민의 행적에 대한 파악은 정부가 국민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업무였다. 특히 정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소소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정부는 이들의 행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베이징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이동 허가증, 잠시 체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시 체류 허가증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또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를 위한 가옥을 임대하는 일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제한을 가하였다. 주택 임대는 외국인들의 베이징 정착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일로, 정착할 곳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 이에 대한 통제는 곧 당시 정부의 베이징 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1. 내지에서의 이동 및 행적에 대한 통제

외국인들이 중국으로 건너오기 시작하였던 개항 초기 외국인의 자유로운 이동은 通商口岸을 비롯한 지정된 구역 이내로만 한정하며 중국인과의 雜居 및 교류 일체를 불허하였다.⁶³⁾ 그러나 1858년 체결된 《天津條約》을

63) 외국인과의 통상행위 및 교류 일체를 금하는 내용의 《禁止與敵通商條例(民國7年4月17日)》, 《內務部禁止與敵通商條例試行細則(民國7年5月18日)》 등을 반포하였다. 蔡鴻源 主編, 『民國法規集成』第17冊, 黃山書社, 1999, pp.351-353.

통해 외국인이 이동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갔다. 조약에 의하면 외국인이 100리의 거리, 기간이 3-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비교적 가까운 곳을 가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지만,⁶⁴⁾ 비교적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다른 省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지통행허가증[內地游歷執照]’을 발급받고 이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규정하였다.⁶⁵⁾ 남경국민정부 또한 각국과 체결한 조약들을 근거로 외국인이 내지에서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을 허가하며 이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상응하는 허가증을 발급받아 이를 지참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내지 지역⁶⁶⁾으로 가고자 하는 외국인은 ‘내지통행허가증[內地游歷執照]’ 발급을 위하여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본국의 영사관에 성명 · 성별 · 연령 · 국적 · 직업 · 목적지 · 사유 · 외유 기간 · 동행하는 가족 상황 · 기타 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사진 2장과 보증서 1장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⁶⁷⁾ 각국 주재공사나 영사들이 자국 인민이 제출한 서류에 서명하도록 했는데, 이는 그 신원을 다시 한번 보장하는 역할을 하였다.⁶⁸⁾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급된 서류에

64) 《天津條約 第九條》，王鐵崖，『中外舊約彙編』第一冊，三聯書店，1957，p.97.

65) 柴松震，「略論晚清政府關於來華外國人內地游歷的執照制度」，『時代法學』05-04，2007，p.54.；1896년 체결한 《中日通商行船條約》 제6관에서는 일본 신민들이 내지 여행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내지로 가고자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일본영사관에서 발급하고 중국 지방관이 서명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했다. 조사 시에 이를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불법행위를 한 것이 발각될 경우, 가까운 영사관으로 보내어 처벌받게 하되, 중간에 구금을 할 수는 있으나 학대를 가할 수는 없다. 소지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한 벌금은 300량을 넘길 수 없었다. 褚德新·梁德 主編，『中外約章滙要』，黑龍江人民出版社，1991，pp.293-294.

66) 다니고자 하는 지역이 4개 이상의 省에 속할 경우에는 그 허가증 발급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특히 열하행궁·동릉·서릉과 같은 왕조의 유적지 같은 곳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영사관을 통하여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특별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만 가능했다.

67) 발급을 위한 수수료로 증명비[護照費] 2원과 인화비(印花費) 은 1원을 납부해야만 했다. 또한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을 때에도 같은 과정을 거치고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했다. 「北平市管理無約國人請領居留執照暨旅行護照暫行規則 第五條」，「北平市管理無約國人請領居留執照暨旅行護照暫行規則 第六條」，趙炳坤，『中國外事警察』，商務印書館(上海)，1935，p.306.

68) 무약국인 및 무국적인 가운데 내지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상기된 항목을 여행 떠나기 7일 전에 미리 제출해야 심사를 받아야 했다. 주재 영사관 및 대사관이 없으므로 공안국장이 직접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신청자는 공안국으로 직접 와서 이를 수령해 가야만 했다. 「北平特別市發給旅行護照居留執照暫行辦法 第二條」，「北平市政府發給旅行護照居留執照暫行規則 第三條」，趙炳坤，앞의 책，p.313.

관할 구역 지방관이 시정부를 대신하여 이를 인준한다는 도장을 찍어야만 비로소 그 서류는 통행 허가증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인 유효기간은 6개월 혹은 1년 정도였으며, 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에는 반드시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⁶⁹⁾

정부는 한편 외국인에게는 발급받은 통행 허가증을 중국 내지를 돌아다니는 기간 내내 언제나 소지하고 다니면서 정부의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⁷⁰⁾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지나가는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는 수시로 검사의 명목으로 그것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며, 외국인은 이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을 규정하였다.⁷¹⁾ 뿐만 아니라 검사를 위한 허가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발견된다면,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인민은 지방관이 구류하였다가 인근 해당 국가의 영사관으로 인도해야 했으며,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인민은 지방관이 잠시 구금하였다가, 관할 구역 관장에게 보고하여 형량을 심사하고 처벌을 결정하도록 하였다.⁷²⁾ 지방관은 통행 허가증을 검사하여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마땅히 그 통행을 허가해 주되, 여행 기간 동안 그들의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다.⁷³⁾

또한 허가증 검사과정에서 유효 기간이 지난 것이 발견될 경우 즉각 무효로 처리되었으며, 허가증에 쓰여진 글씨가 훼손되었거나, 임의대로 수정을 가한 흔적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폐기처분하도록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검사 과정에서 처음 통행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서에 기록했던 사유와 목적지, 그리고 신청자의 성명이나 신분이 실제와 다른 것이 발견될 경우에도 허가증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며 외국인은 勒令(강제령)으로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⁷⁴⁾

69) 「北平市管理無約國人請領居留執照暨旅行護照暫行規則 第八條」, 위의 책, p.307.

70) 본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을 때에도 같은 과정을 거치고,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했다. 「北平市管理無約國人請領居留執照暨旅行護照暫行規則 第六條」, 趙炳坤, 위의 책, p.307.

71) 「北平市管理無約國人請領居留執照暨旅行護照暫行規則 第九條」, 趙炳坤, 위의 책, p.307.

72) 趙炳坤, 위의 책, p.85.

73) 여행을 다니는 외국인이 불안정한 지역에 이르렀을 경우, 지방장관이 외교부에 알려 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일 경우, 인근 지역의 관리가 그 여행을 적극 저지해야 했다. 만약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는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趙炳坤, 위의 책, p.84.

정부는 또한 중국을 돌아다니는 외국인의 행동 및 일거수일투족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여행을 다니는 외국인들에게도 많은 제한을 가하고자 하였다. 외국인은 여행에 필요한 짐 이외의 화물 및 상업 행위 등에 사용되는 물건을 휴대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⁷⁵⁾ 또한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는 임의대로 사진을 찍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으며, 길거리에서 광물을 함부로 탐채(探採)하는 행위, 신고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거나 정부에서 금기시하는 일체의 품목을 숨기고 다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하였으므로,⁷⁶⁾ 이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또한 스스로 주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총이나 창 그리고 총알과 같은 방어 용품을 휴대가 허용되긴 하였지만 이는 중국인들과 분쟁을 일으키거나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많았기에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무기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주재 본국 영사관을 통해 중국 외교부에 소지하고 있는 무기의 숫자와 정황에 대해 분명하게 신고하고, 정부에서 발급하는 무기 소지에 대한 특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함께 소지하고 있게 하였다.⁷⁷⁾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남경국민정부는 ‘허가증[執照]’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그것을 소지하고 각 경계지역을 통과하면서 검사를 받을 때마다 그 외국인의 행적이 자연스럽게 외국인의 본국 대사관과 중국의 행정당국에 보고되도록 하였다. 중국 정부는 지정한 규정을 준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동향 하나하나에 대하여 상세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파악하면서 효과적으로 감시하려고 했던 것이다. 외국인으로

74) 「北平市管理無約國人請領居留執照暨旅行護照暫行規則 第十二條」, 趙炳坤, 위의 책, p.307.

75) 만약 화물운송이나 상업 행위와 같은 목적의 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관에서 발급한 三聯單子口單을 수령하여 제출하고,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받도록 하였다. 趙炳坤, 위의 책, p.83.

76) 趙炳坤, 위의 책, pp.84-85.

77) 외국인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먼저 현(시)정부에 가서 신청서를 받아 국적과 성명·직업·무기류·무기일련번호와 탄창의 숫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후, 영사관에서 서명과 보증을 거친다. 그 다음 소지인의 2촌 길이의 상반신이 나온 사진과 증명수속비(구식 무기일 경우 2위안, 신식 무기일 경우 1위안) 및 소지하고 있는 무기를 현(시)정부에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은 후, 성정부에서 무기 소지 증명서 발급을 인준해야 했다. 무기를 소지한 외국인은 여행 허가증을 검사받는 동시에 무기와 무기 증명서도 동시에 검사받아야 했다.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무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무기를 즉시 몰수하고 증명서는 폐기처분되었다.

「平市修正發給旅居中國外人自衛槍枝執照暫行條例」, 趙炳坤, 위의 책, pp.319-320.

서는 합법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해당 지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는 ‘내지통행허가증’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검색을 가함으로 인하여 외국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거나, 이로 말미암아 외교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한편 잠시 베이징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도 제정하였다. 정부는 무약국인 혹은 무국적자가 베이징에서 잠시 동안 체류하고자 한다면, 우선 ‘거류허가증[居留執照]’를 발급해주었다. 베이징에 도착한 지 3일 이내에 성명 · 성별 · 연령 · 국적 · 직업 · 거주지 · 함께 사는 가족 · 예상되는 체류 기간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공안국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은 거류허가증을 발급받도록 했다.⁷⁸⁾ 거류허가증을 신청하면서 앞의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관서에서 限令(시간이 한정된 명령)이나 勒令(강제령)으로 추방할 수 있게 하였다.⁷⁹⁾ 일반적으로 거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며, 내지통행허가증과 마찬가지로 그 위에 쓰여진 기간만을 유효기간으로 인정하게 하였다.⁸⁰⁾ 지방 관서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류허가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으며, 외국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었다.⁸¹⁾ 만약 이전에 거류허가증을 발급받은 무약국인 혹은 무국적자가 불법행위를 하거나 치안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면 중국의 법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그 거류허가를 취소하고 당장 추방하게 하였다.⁸²⁾

남경국민정부는 허가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가 그의 행적 하나하나를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행적이 의

78) 「北平市管理無約國人請領居留執照暨旅行護照暫行規則 第二條」, 趙炳坤, 위의 책, p.306.

79) 「北平市管理無約國人請領居留執照暨旅行護照暫行規則 第十條」, 趙炳坤, 위의 책, p.307.

80) 신청비용은 증명비 2위안, 인화비 1위안으로 내지통행허가증 발급 비용과 동일하였다. 「北平市管理無約國人請領居留執照暨旅行護照暫行規則 第六條」, 趙炳坤, 위의 책, p.307.

81) 「北平市管理無約國人請領居留執照暨旅行護照暫行規則 第九條」, 趙炳坤, 위의 책, p.307.

82) 「北平市管理無約國人請領居留執照暨旅行護照暫行規則 第十一條」, 趙炳坤, 위의 책, p.307.

심스러운 경우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에 특별령을 내려 특별히 주의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는 몇몇 한인들에 대해서는 행적이 의심스러우니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하거나,⁸³⁾ 원래 다른 지역에 호구등기를 한 한인이 베이징에 와 있으면서 그 어떠한 등기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경우 그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지 분명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경찰국 보고서⁸⁴⁾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난다. 정부는 외국인들의 소소한 움직임들조차도 ‘관리’와 ‘보호’라는 명목으로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2. 장기 거주에 대한 통제

상술한 내지 여행 허가증 및 체류 허가증 발급과 같은 제도를 시행한 것은 단기간 중국에 머무는 외국인의 유동적인 일상생활에 대해 통제를 가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장기간에 걸친 정적인 일상생활, 그 가운데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거주지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한 통제는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을까?

중화민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하여 가옥 및 토지에 대한 임대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⁸⁵⁾ 토지 소유를 둘러싸고 자국인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재산권 행사를 통한 외국인의 중국 내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정부에서는 1930년(民國19年)에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을 공포하

83)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1-07627 「北平市公安局內一區警察署關於金山源行迹可疑請訊辦的呈(1930.01)」, J181-021-13349 「北平市警察局外五區警察署關於朝鮮人裴鎮煜形迹可疑的呈(1921.01)」

84)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1-28098 「北平市警察局外一區警察署關於朝鮮人申雲錫與李二惠互毆請訊辦的呈(1934.07)」

85) 중국은 자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거주권 및 토지권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였는데, 이는 조계가 설립된 원인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조계가 설립된 이후부터 중국 내에 있는 외국인의 토지권은 ‘租賃’ 및 ‘永久租賃’ 으로서만 한정되었다. 趙炳坤, 앞의 책, p.90 ; 뿐만 아니라, 농경지·林地·牧地·漁地·鹽地·鑛地· 군사지역 및 국경 인근 지역에 있는 토지는 외국인에게 임대할 수조차 없었다. 《土地法》, 蔡鴻源 主編, 『民國法規集成』 39, 黃山書社, 1999, p.341.

여86) 외국인이 베이징 내에서 가옥을 임대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 나갔다.

우선 가옥 및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고자 하였다.⁸⁷⁾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중국의 관공서 · 학교 · 회사 · 공장 등에 고용된 인원, 각 교회의 선교사나 병원의 의사, 언론사나 신문사의 취재원,⁸⁸⁾ 각 대사관 및 영사관의 직원, 그리고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베이징 내에서 가옥을 임차하여 거주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⁸⁹⁾ 이러한 조건에 속하지만 국적이 없거나 혹은 불분명한 자, 범죄로 인하여 도망을 다니고 있는 자, 소행이 단정하지 않거나 정당한 직업이 없는 자, 그리고 공안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정부는 가옥의 임대를 불허하였다.⁹⁰⁾ 가옥을 임대하려는 외국인의 신분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 외국인 가옥 임대 정책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엄격하게 적용되는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⁹¹⁾

또한 확실한 계약서 작성과 공안국 인증의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임차인(承租人)의 국적 · 성명 · 직업 및 가족 현황과 임대인(出租人)의 성명 · 직업 · 주소, 임대 거래 된 가옥의 위치 · 문패 · 방간(房間)의 숫자 및 부속물 일체 그리고 공터의 길이와 넓이, 임대료의 액수 및 지급방법 그리고 임대기간 등의 세부 항목을 공안국에서 양식을 지정한 계약서에 상세하고 확실하게 기록하게 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인준을 받아야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⁹²⁾ 즉, 중국인 임대인과 외

86) 외국 교회에서 토지에 대한 약간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토지의 임대권으로만 한정되었을 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趙炳坤, 앞의 책, pp.90-97.

87) 조약 체결국이면 無約國이면 상관없이 외국인이 중국에 거주하고자 할 경우, 그 지역을 모두 통상지역으로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허가받은 자들에 한하여 중국의 내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인정하였는데, 그 조건을 한정지었던 것이다.

88) 언론사와 신문사의 취재원이 토지나 가옥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다.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 第二條」, 趙炳坤, 위의 책, p.308.

89) 외국인은 거주 이외의 목적, 즉 회사나 상점을 개설하거나 공사업 경영 등을 할 수 없었다.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 第二條」, 趙炳坤, 위의 책, p.308.

90)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 第三條」, 趙炳坤, 위의 책, pp.308-309.

91) 가옥을 임대하려는 외국인이 무약국의 사람이거나 무국적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본국에서 발급한 護照나 중국관청에서 발급한 여행허가서 및 北平市에서 발급한 거류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 그 신원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했다.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 第二條」, 趙炳坤, 위의 책, p.308.

국민 임차인 양자 간의 계약으로만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인기관의 허가를 거쳐야만 그 계약이 인정되었다는 뜻이다.⁹³⁾

또한 임대 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⁹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처음 임대 계약을 맺을 때와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를 한 후 다시 공안국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도록 하였다. 만약 수리할 부분이 생겨서 당장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더라도 임대인이 《北平特別市 建築規則》에 의거해서만 처리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도록 하였다.⁹⁵⁾

그러나 이상의 규정들이 결코 임차인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임대인 ·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는 계약서에 명기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만약 한 쪽이 규정을 위반하면, 다른 한 쪽이 계약 파기를 주장할 수 있었다.⁹⁶⁾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특별한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임차인을 추방할 권리는 없었다.⁹⁷⁾ 즉, 계약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사회 치안 유지를 이유로 까다로운 조건들을 적용하기는 하였지만 일단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지정한 규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우를 시행하였던 것이었다.

상술한 규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또한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공안국에 보고와 인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외국인에게 불법적으로 주택을 임대해 준 중국인에게는 임대료의 1배에서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중국인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으며, 임대 계약

92)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 第四條」,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 第七條」, 趙炳坤, 위의 책, pp.309-310.

93) 공안국의 인준을 거친 후 성사된 임대 계약서는 총 네 부로 작성되었다. 그 가운데 한 부는 공안국에 보관하고, 한 부는 해당 구를 관할하고 있는 區警察署에 보관하여 호구조사를 비롯한 외국인 관리 업무에 대비케 하였다. 나머지 두 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나누어 보관하도록 하였다.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 第八條」, 趙炳坤, 위의 책, p.309.

94)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 第七條」, 趙炳坤, 위의 책, p.310.

95)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 第九條」, 趙炳坤, 위의 책, p.310.

96)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 第十一條」, 趙炳坤, 위의 책, p.310.

97) 임대인과 임차인 한 쪽이 계약서에 정해진 조항을 어기거나, 계약 성립 이후 주택 임대 거래에 제한을 받는 분류에 속한다는 것이 발견될 경우, 즉각 공안국의 인준은 취소되었으며 임대 계약은 취소되었다.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 第十條」, 趙炳坤, 위의 책, p.310.

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사자에게는 추방 조치가 취해지도록 규정하였다.⁹⁸⁾

계약서에 대한 임의적인 수정 또한 금지사항이었다. 임대 계약 과정에서 공안국의 인준을 거친 이후, 계약 당사자들이 사사로이 계약서에 수정을 가한다면 해당 계약을 즉시 취소하며 임대료의 1배에서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하였다.⁹⁹⁾ 만약 계약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 보충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용지를 덧붙여 첨부하는 형식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렇게 첨부한 용지에도 계약 당사자의 서명을 반드시 하고 공안국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¹⁰⁰⁾

일부 중국인들은 공안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외국인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약간의 웃돈을 받으면서 임대 계약을 성사시키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중국인이 외국인을 대신하여 명의를 내어주어 외국인이 중국인으로 가장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임대 계약을 성사시켜 정부 행정에 혼란을 가져다 준 중국인에 대해서는 사사로이 외국인에게 임대해 주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계약을 취소시키는 것은 물론이었고, 임대료의 1배에서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¹⁰¹⁾ 또 만약 해당 중국인에게 형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법원으로 송치하여 사법기관의 처리를 받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¹⁰²⁾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상점에 대해서 공안국에서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명을 내려 경찰을 파견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

98)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 第十四條」, 趙炳坤, 위의 책, pp.310-311. : 중국인이 사사로이 한인에게 가옥을 임대해 주거나 자신들이 임대를 받은 후 다시 한인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해 준 경우로는 全宗號 J181-021-28000 「北平市警察局內一區署關於張士元私將承租之房租給朝鮮人居住未立合同請訊辦的呈(1934.01)」, J181-021-28009 「北平市警察局內三區署關於付濤等將房租借朝鮮人畏罪潛逃現經查獲歸案請訊辦的呈(1934.01)」, J181-021-28014 「北平市警察局內三區署關於任鶴齡將房租住朝鮮人應其居住請訊辦的呈(1934.01)」 J181-021-46377 「北平市警察局內一區警察署關於柏李氏未立合同私將住房分租朝鮮人一案的呈(1936.01)」, J181-021-46273 「北平市警察局東郊區警察署關於李張氏私租與韓人文敬明等房屋的呈(1936.01)」 등이 있었다.

99)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 第十四條」, 趙炳坤, 위의 책, pp.310-311.

100)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 第六條」, 趙炳坤, 위의 책, p.309.

101)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 第十四條」, 趙炳坤, 위의 책, pp.310-311.

102)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 第十五條」, 趙炳坤, 위의 책, p.311.

고 보호하도록 하였다.¹⁰³⁾ 이는 명목상으로는 중국이 지정한 규정들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외국인에게 자국민과 마찬가지로의 보호를 해주며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일종의 혜택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베이징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일면을 세세하게 감시하려고 했던 정부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확실한 관리를 위해 특정 인물이 주택 임대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특별 감시를 명한다던지,¹⁰⁴⁾ 외국인 특히 한인들이 연루된 거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명령하기도 하였다.¹⁰⁵⁾ 또한 이들이 연루된 사건의 처리 방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모색하기도 하는 등¹⁰⁶⁾ 자신들이 제정한 방침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관리대상으로 인식한 정부는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주택 임대와 같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들도 경찰 당국의 인준을 받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이는 보호라는 명목 하에 시행되었지만 감시와 통제가 더 큰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잘 준수한다면 베이징 내에서의 편안함을 보장해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를 어긴다면 합법적으로 추방 등의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국의 통치권을 사회의 더욱 하부 깊숙한 곳까지 확장시키면서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던 정부의 시도들은 당사자인

103) 공안국에서는 관할 구역 경찰서에 외국인에 대한 특별 주의 및 보호를 당부하여 이를 위하여 경찰을 파견하여 처리하도록 명을 내리기도 하였다. 특히 후베이성(湖北省)과 같은 지역에서는 사복 경찰관[便衣警士]를 파견하여 암암리에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 보호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趙炳坤, 위의 책, p.143.

104)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0-16382 「北平市公安局關於令韓人朴姓騰房的訓令(1934.01)」, J181-020-16384~6 「北平市公安局關於令韓人伊仁燮騰房的訓令1,2,3(1934.01)」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105)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0-29759 「北平市公安局內外五區警察署關於日韓人占房售毒調查表(1930.01)」, J181-020-16381 「北平市公安局關於查明韓人違法侵占住房的訓令(1934.01)」, J181-020-21772 「北平市政府關於韓人住房由房主收回處置不分情等的指令(1935.01~12)」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106)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0-25281 「北平市公安局二三科關於市政府開會討論韓人租房糾葛的函(1935)」

외국인들에게는 차별 대우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과정의 복잡함, 공안국 인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의 부족,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의 문제 등 번거로움과 정부로부터 주목받는 시선을 피하고 요행을 찾는 외국인들도 있었다. 이러한 요행을 찾는 행위들은 개인 사이에 사소한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야기하는 문제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는 자국의 국민들에 대하여 보호를 해줄 의무가 있었으며, 치안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통하여 사회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인정받아야만 했던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좀 더 강력한 강제 조치들을 필요로 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불법 행위의 사례와 그 해결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부의 정책들이 실제로 사회 하층까지 어떻게 적용되고 있었는지 알아보겠다.

Ⅲ. 사례를 통해 본 정책 시행의 실태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남경국민정부는 자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자신들이 제정한 規章만 준수한다면 마찬가지로의 대우를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정책들은 사회 전반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는가? 만약 외국인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였을까? 불법행위가 일반적인 중국인의 이익, 더 나아가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어떠하였는가? 그리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였던 중국인, 그리고 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호구조사 결과 파악된 베이징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일본인과 더불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한인들이었다. 1914년(民國3年)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인들의 숫자는 20여 명에 불과했지만,¹⁰⁷⁾ 20년대 초가 되면 약 800여 명에 달했으며, 2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그 숫자가 1천여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⁸⁾ 또한 1934년(民國23年)에는 당시 베이징의 15개 행정 구역¹⁰⁹⁾ 北平市 內一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의 총 호수(戶數)가 1백여 호이며, 그 숫자가 300여 명에 달하였다.¹¹⁰⁾ 1935년(民國24年)에 파악된 외국인 4,081명 가운데 한인이 1,387명 이¹¹¹⁾ 그 다음해에는 1,385명(1936년)으로¹¹²⁾ 약간 줄었다가, 1939년에는

107)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18-03819 「參謀本部通知調查在京韓人良莠不齊頗堪注意卷(1914.04)」

108) 님 웨일스·송영인 譯, 『아리랑』, 동녘, 2005, pp.189-190.

109) 1928년 6월, 京師警察廳을 北平特別市公安局로 개정된 이후, 북평시공안국의 기구에 대해 일련의 조정을 단행하였다. 內城을 총 6개의 區로, 外城을 총 5개의 區로, 그리고 東郊·西郊·南郊·北郊 각각 1區의 총 15개의 區로 구역을 획정하고, 각 區에는 區 警察署를 설치하였다. : 韓延龍 主編, 『中國近代警察制度』,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1993, p.571-572.

110)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0-14387 「內一區署呈報擬具驅逐韓人辦法正在飭屬試行茲抄同原擬辦法請鑒核情形(1934.05)」

111) 전체 베이징 인구 1,533,083명 가운데 외국인은 4,081명, 그 중에서 한인이 1,387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北平市公安局, 『北平市政府公安局民國24年度施政統計表』

112) 전체 베이징 인구 1,533,083명 가운데 외국인은 4,081명으로 전년도와 변함없으나, 한인의 숫자만 1,385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北平市政府 秘書處 第一科 統計股 『北平市統計要覽(1936年)』

9,353¹¹³⁾에 달할 정도로 그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에 편승하거나 혹은 반강제적으로 내륙 지역으로 이동한 한인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을 듯하다.¹¹⁴⁾

전체 외국인들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한인들은 다양한 불법행위에 연루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자신들의 정책이 사회하층까지 영향을 미쳐 원활하게 적용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다. 또한 한인들이 가끔 중국인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종종 큰 문제로 확대되면서 사회의 치안에 방해가 되는 위험 요소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한인들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에 대한 남경국민정부 정책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되어가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北平市公安局에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한인들이 연루된 주택 임대와 관련된 안건들을 살펴보았다. 주택 임대를 둘러싼 불법행위는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가장 많았던 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가 분쟁이 벌어진 경우였으며, 중국인으로 가장하거나 중국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성사시켰다가 문제가 확대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처벌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규정이 실제 상황에서 잘 적용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부에 대한 당사자인 한인들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잘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113) 楊昭全 等編, 『關內地區朝鮮人反日獨立運動資料匯編』 上冊(1919-1945), 遼寧民族出版社(沈陽), 1987, p. 107.

114) 일본측 자료인 『外務省警察史 : 支那ノ部』에서도 「朝鮮人ノ現況ニ關スル件」과 같이 베이징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 대한 조사자료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의 통계자료에 나타난 수치는 한인의 실제 정황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인은 그 민족정신으로 인하여 일제에 신분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1. 강제점거에 대한 처벌

1936년 11월 어느 날 외오구(外五區)의 경찰서에는 중국인과 한인이 서로를 고소하는 사건이 접수되었다. 자오주이쯔후통(趙錐子胡同) 14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지푸씨(吉傅氏)가 한인 차보씨(車普氏) 등이 강제로 집을 점거하고서는 가라고 권해도 가지 않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한인 차보씨는 지푸씨 무리가 자신들을 집단 폭행해 대퇴부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신고하였다.¹¹⁵⁾ 경찰은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양측을 모두 연행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지푸씨가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저는 자오주이쯔후통 14호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집의 방 두 칸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집주인이 아직 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바깥으로는 이미 영업을 그만둔 만서우푸(饅首舖) 방 2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만서우푸에는 뒷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 우리 집 안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조선인 차보씨가 그 남편인 차광순(車廣順)과 함께 잠겨있는 만서우푸의 문고리를 부셔버리고 비어있는 가게 내로 잠입하더니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가게 뒷문을 통해 우리 집으로 들어오더니 그 곳을 강제로 점거해버렸습니다. 이에 나가라고 권하였는데 그들은 듣지 않고 버티며 도리어 제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집주인인 티엔춘푸(田春福)씨에게 알리자, 그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때문에 경찰서까지 오게 된 것이니 부디 확실하게 조사하여 저 한인들을 처벌해주십시오.¹¹⁶⁾

경찰은 한인 차보씨 또한 경찰서로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그의 진술을 받

115)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1-46710 「北平市警察局外五區警察署關於吉傅氏控告朝鮮人車普氏強占房間並據朝鮮人車普氏反控吉傅氏集眾毆傷一案的呈(1936.11)」

116) 北京市檔案館 所藏, 위의 당안.

왔다.

둥단파이러우(東單牌樓) 화중판디엔(華忠飯店)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자오주 이즈후통 14호에 빈 방이 있어 빌려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제 새벽에 房東인 지푸씨와 만나서 세를 얻어 그곳에 들어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밤이 되어서 남편과 왔던 것인데 저 지푸씨가 갑자기 집을 빌려주기 싫다고 하면서 자세한 연유조차 말하지 않고 앞서 계획했던 일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일방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중국인 30여명을 데리고 와서 저와 남편을 마구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는 양쪽 대퇴부 모두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편한 상황입니다.¹¹⁷⁾

지푸씨가 폭행을 가한 주체라고 진술한 집주인 티엔씨(田氏) 또한 경찰서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만서우푸 가게는 제 친척이었던 시씨(石氏)가 운영했던 곳으로 현재는 제가 조추자후통 14호와 더불어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제 저녁에 한국인 차보씨 부부가 갑자기 제가 관리하던 만서우푸의 문을 훼손하고 들어와서는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여 오늘 아침까지는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버티고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중국인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문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잠가버렸을 뿐, 결코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¹¹⁸⁾

한인 차보씨 부부는 시에서 제정한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에 정해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어있는 곳을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진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직업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건

117) 北京市檔案館 所藏, 위의 당안.

118) 北京市檔案館 所藏, 위의 당안.

대 한인 차보씨 부부는 확실한 직업을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¹¹⁹⁾ 즉, 임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공안국의 심사를 통과할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까다로운 공안국 인준의 과정을 거치는 대신 결국 무단 점거를 벌이는 것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중국인 지푸씨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한인들을 쫓아내야만 할 이유가 있었다. 주택 임대 과정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무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임대계약을 위한 거래가 오고가면 중국인 집주인은 우선 상대방 한인의 국적 · 성명 · 연령 · 직업 · 가족 사항을 확실하게 조사하고 임대 용도를 분명하게 밝힌 이후에야 계약에 임할 수 있었다.¹²⁰⁾ 상술한 바와 같이 만약 불법적으로 한인들을 거주하게 한 것이 발견될 경우 임대료의 1배에서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이 경우에 정부는 중국인 집주인에게 5일 혹은 7일 이내에 외국인들을 추방할 의무를 부여하기도 하는 등¹²¹⁾ 일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은 상술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경찰에서는 한인들이 주택을 강점한 것은 잘못된 일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이에 마음대로 주택을 점거하여 중국인들과 분쟁을 야기한 한인 부부 두 사람은 가차 없이 주택에서 추방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총영사관¹²²⁾에 알려 함께 조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또한 한인들을 일본총영사관으로 송치하여 처리 받게 하되 일본 측에도 분명하게 조사하여 처벌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임의대로 사람을 폭행한 지푸씨와 티엔씨 두 중국인에게도 처벌이 내려

119) 北平市公安局에 접수된 상당수 당안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을 보면 우선 자신의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당안에서는 그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차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거나,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20)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 第十五條」, 위의 책, p.311.

121)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0-14387 「北平市公安局內一區署呈報擬具驅逐韓人辦法正在飭屬試行茲抄同原擬辦法請鑒核情形(1934.05)」

122) 일본은 중국에 강요된 불평등조약에 규정된 영사재판권을 확대해석하여, 영사재판권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는 갖고 있지 않은 영사관 경찰이라는 무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 신민을 보호 혹은 징벌하는데 필요한 영사재판소의 사법적 기능을 ‘연장’한 것이라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었다. 閔斗基, 「萬寶山事件(1931)과 韓國言論의 對應」, 『東洋史學研究』 65, 1999, p.146.

졌다. 경찰은 아무리 소소한 갈등이라도 일단 개인의 신체에 상해가 가해진 경우라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초지일관 개입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¹²³⁾ 두 사람에게 대한 처벌은 北平地方法院에서 결정하게 되었다.¹²⁴⁾ 北平地方法院에서는 이 두 사람에게 대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상세한 조사(偵查)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푸씨가 실제로 구타에 가담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으므로, 지푸씨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티엔씨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¹²⁵⁾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였던 한인 부부의 이름으로 작성된 기소장이 필요했기에 일본 측에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¹²⁶⁾

이와 같이 주택 임대를 둘러싼 갈등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한인이 주택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면서 집주인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가 호구조사를 위해 조사를 나왔던 경찰에 의해 발각되기도 하였다.¹²⁷⁾ 외국인의 현황 파악 과정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호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호적경사는 호구조

123) 개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자국 내에 거주하는 인민에 대하여 마땅히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었다. 또한 종종 폭행 사건이 치안을 위협하여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에 경찰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이다.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0-21600 「北平市警察局內四區關於韓人梁奉潔與友人金姓等人酒醉爭吵以傷輕微不願起訴令(1935.06)」,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0-31060 「北平市警察局外二區警察署關於韓人金京珍與他人發生紛糾經交涉已道歉的呈(1937.04)」,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0-21401 「北平市警察局內二區警察署關於韓人治世國與軍士郭鉅和等爭吵毆打經警排解情形的呈(1935.08)」, J181-021-37760 「北平市警察局外一區警察署關於韓人金思業與崔延亭互控毆打的呈(1935.11)」 등의 당안에 기록된 사건들은 모두 당사자 간의 화해나 합의, 혹은 경찰에 의한 중재가 이루어졌으므로 기소 등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원하였으나, 경찰은 사건이 시작되고 종료될 때까지 시종일관 계속 간여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24) 北京市檔案館 所藏, 위의 당안. ; 형법 제29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살해할 의도가 없이 타인의 신체 혹은 건강에 상해를 가한 경우를 傷害罪로 규정하였다. 일반 상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타인에게 끼친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강도에 조금씩 차이가 있도록 했다.

125) 北京市檔案館 所藏, 위의 당안.

126) 北京市檔案館 所藏, 위의 당안.

127)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1-21913 「北平市警察局關於便衣警徐錫增被韓人金敬載毆傷查其下落見報的指令(1935.1)」 이 경우의 한인들은 자신들의 가재도구를 다 옮겨다놓고 집주인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 이 이외에도 J181-021-37472 「北平市警察局外二區警察署關於史久延控告朝鮮人李玉冒名強住間的呈1,2(1935.01)」, J181-020-22354~6 「北平公安局關於查明白質明報韓人強占房求通出的訓令1,2,3(1935.01)」 등의 강제로 주택을 점거하고 있는 한인들에 대한 조사 및 그 처리과정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다.

사를 하는 과정에서 호적등기부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일치하는 지도 분명하게 조사하였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발견될 경우 즉각 관할 구역 경찰서에 보고하여 지정된 규칙에 따른 처벌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중국인이 주택을 불법 점거하고 갈등을 일으킨 한인을 직접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¹²⁸⁾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비록 한인이 불법적으로 점거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인의 입장에서 한인들과의 갈등에 휘말려 의도하지 않은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기록이 남게 되는 것도 문제였다. 이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와는 상관없이 중국 측에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게 경제적 잇속을 노리고 한인들에게 불법적으로 주택을 임대해주었다고 보여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주택 불법 점거에 주목하였으며, 강경한 태도로 대하였는가? 물론 불법 주택 점거가 호구 조사나 세금 징수와 같은 사회 운영 전반에 있어 기초가 되는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불법 점거 행위를 벌이는 한인들의 불안정성과 이로 말미암은 범죄 현장으로 악용 가능성이라는 위험 요소에 있었다.

주택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가 적발된 한인들 대다수가 정당한 직

128)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1-46677 「北平市警察局外五區警察署關於劉振東控告朝鮮人朴永浩等人強占住房一案的呈(1936.01)」, J181-021-36010 「北平市警察局內四區警察署關於王華溪報告韓人金彩厚強住房屋的呈(1935.01)」, J181-021-36539 「北平市警察局外二區警察署關於於文順控告韓人王精武霸住房屋的呈(1935)」, J181-021-36540 「北平市警察局外三區警察署關於李雨軒報韓人張哲先冒租民房的呈(1935)」, J181-020-22364 「北平公安局關於文西園等呈戶被朝鮮人侵占請予保護的呈(1935.01)」, J181-021-37472 「北平市警察局外二區警察署關於史久延控告朝鮮人李玉冒名強住間的呈1,2(1935.01)」, J181-020-22354~6 「北平公安局關於查明白質明報韓人強占房求通出的訓令1,2,3(1935.01)」 J181-021-46677 「北平市警察局外五區警察署關於劉振東控告朝鮮人朴永浩等人強占住房一案的呈(1936.01)」, J181-021-36010 「北平市警察局內四區警察署關於王華溪報告韓人金彩厚強住房屋的呈(1935.01)」, J181-021-36539 「北平市警察局外二區警察署關於於文順控告韓人王精武霸住房屋的呈(1935)」, J181-021-36540 「北平市警察局外三區警察署關於李雨軒報韓人張哲先冒租民房的呈(1935)」, J181-020-22364 「北平公安局關於文西園等呈戶被朝鮮人侵占請予保護的呈(1935.01)」, J181-021-46688 「北平市警察局外二區警察署關於鐵門五號房主吳蔗國控告房客夏杰亭勾結朝鮮人趙尙俊強行占住房間售索毒品一案的呈(1936.01)」, J181-020-21683 「北平市政府關於韓人尹歸漢霸住民房同日使館商議會期騰出的指令(1935.01~12)」, J181-020-21684~5 「北平市政府關於韓人尹歸漢霸民房勒令騰出的指令(二,三)(1935.01~12)」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¹²⁹⁾ 정부는 정확한 생계 수단도 없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된 불안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¹³⁰⁾ 그렇기에 아무래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호구조사 시 이들에 대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었던 것이다.¹³¹⁾

또한 白面¹³²⁾과 같이 정부에서 강력하게 금하는 마약류 거래에 관련된 외국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인이었다는 사실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고도 볼 수 있을 듯하다. 아편으로 인한 피해를 절실하게 느낀 경험이 있었던 중국은 민국 시기로 접어든 이후에도 마약류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시행하였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자는 중형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중독자에 대해서는 계연소(戒煙所)로 보내어 치료하거나 일정의 노동으로 그 형벌을 대신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였다.¹³³⁾

129) 1939년(民國28年)에 조사된 자료를 살펴보면,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9,353명의 한인들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3,000명이 넘는 숫자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楊昭全等編, 『關內地區朝鮮人反日獨立運動資料匯編』上冊(1919-1945), 遼寧民族出版社(沈陽), 1987, pp. 105-107.

130) 중국 경찰은 조사된 한인의 상당수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하며, 이들 중 많은 수가 헤로인과 같은 마약류를 다루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주의를 기울이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한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0-14387 「北平市公安局內一區署呈報擬具驅逐韓人辦法正在飭屬試行茲抄同原擬辦法請鑒核情形(1934.05)」

131) 베이징 내에서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은 민국 성립 직후부터 보이고 있다.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시행하여 사회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골라내야 한다는 내용의 J181-018-03819 「參謀本部通知調查在京韓人良莠不齊頗堪注意卷(1914.04.01.)」, 각 구의 경찰서로 하여금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한인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시행한 후, 4촌 길이의 상반신이 나온 사진 뒤편에 이름과 거주지를 적고, 명단표와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는 J181-018-15207 「京師警察廳關於請內外二十區署分別調查在京韓人無論入籍與否均飭具相片書寫姓名列表送廳備案的訓令(1923.04.16)」 등의 당안에서도 그 입장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베이징으로 이주해 오는 한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그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안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사진과 이름 및 이동에 관한 각 사항들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J181-002-00578 「訓令 一零七四 調查韓人案月報廳(1925.07.29)」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입장은 남경국민정부 또한 마찬가지였다.

132) 헤로인을 뜻한다. 모르핀과 마찬가지로 아편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계연약의 형태로 중국에 유입되었다. 중국인들은 헤로인이 백색가루를 하고 있었으므로 백면(白面), 백분(白粉)이라고 불렀다. 朴權, 『20세기 전반 동북아 한인과 아편』, 선인, 2008, p.74.

133)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0-37747 「北平市警察局內四區警察署關於韓人盧石山與中國人趙覺民互控喊傷害的呈(1935.09)」, J181-021-25762 「北平市警察局內三區署關於朝鮮人售白面毆傷警察一案的呈(1934.11)」과 같이 백면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에서도 우선 당사자들을 戒煙所

그러나 마약류의 거래는 중국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다. 1933년도의 경찰청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독품(毒品) 판매 및 운반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70.2%(남56.9% 여13.3%)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들 다음으로 28.4%의 조선인(남 : 27.2% 여 : 1.2%)이 2위를 차지하고 있었다.¹³⁴⁾ 다음해에도 역시 중국인들이 75.8%(남 67.3% 여 8.5%) 가장 많은 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23.7%의 조선인(남 67.3% 여 8.5%)이 2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베이징시의 독품판매자 기록을 살펴보니 많은 한인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정당한 직업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다.¹³⁵⁾ 또한, 이러한 한인들이 불법적으로 점거한 주택은 종종 마약류의 거래와 같은 범죄의 현장으로 악용될 위험의 소지가 높았다. 이는 사회 치안에도 큰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에 대하여 늘 주의를 기울이면서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한인들에 대하여 최종 사법권을 발휘할 수 없었던 중국은 베이징에 정착하고 있는 한인들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관리 정책들을 취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였다. 특히 거주지에 대한 불법 점거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의 시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편법이었고, 정부로서는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거주지 임대에 대하여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불법 행위에 연루된 적이 있었던 한인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하며, 해당 지역에서는 아예 추방되게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시행하려 하였던 것이었다.¹³⁶⁾

로 보내어 치료받게 하고 일정한 勞役に 종사하는 것으로 처벌방향을 결정짓는 사례를 볼 수 있다.

134) 이 이외의 기타 국가로는 1.2%의 일본인이 있었다.

135)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0-14954~5, 위의 당안.

136)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0-14387 「內一區署呈報擬具驅逐韓人辦法正在飭屬試行茲抄同原擬辦法請鑒核情形(1934.05)」, J181-021-25766 「北平市政府關於將售毒韓人抄辦並驅逐出境的指令(1934.01)」 등이 이러한 처리 방법 모색이 논의된 당안들이다.

2. 명의로 용에 대한 처벌

일부 중국인들은 공안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한인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약간의 웃돈을 받으면서 임대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택 거래 행정에 혼란함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로 받아들였으며, 사건에 연루된 한인과 중국인 모두 무거운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1936년 7월 베이징의 外二區 경찰서에 접수된 중국인과 한인 사이에 벌어진 폭행 사건이 바로 그 예에 해당된다.¹³⁷⁾ 이 사건은 중국인 린바오명(林寶亭)이 한인 박성순(朴成淳)을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린바오명은 박성순이 가게 세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계약을 취소하고 쫓아냈다고 그를 경찰에 고소하였다. 동시에 박성순은 린바오명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린바오명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저는 치엔먼파지에(前門大街)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옛 동전들을 사들이는 것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한인 류서평(劉西平)과는 예전에 평시이쉬엔(平西易縣)에서 옛 동전을 수매하는 일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자기가 아는 한인 박성순이 가게를 열만한 건물을 찾는다고 하길래 제가 소개를 해 주었고, 제 명의로 협의하여 후팡치아오(虎坊橋) 48호 이창후이관(宜昌會館)의 방 21間을 전세보증금 150위안에 월세 26위안에 빌리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박성순이 세를 얻은 곳에 잡화상점을 열고자 하였습니 다. 저는 임대 계약 과정에서 월세를 제가 받아다가 집주인에게 주기로 합의하였는데, 박성순에게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물어보니 그는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선금 차원으로 20위안을 박성순으로부터 받아 집주인에게 주었습니다.

137)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1-45594 「北平市警察局外二區警察署關於林寶亭控朝鮮人朴成淳將伊毆打朴成淳訴林寶亭欺騙的呈(1936.07)」

그런데 박성순이 가게를 실제로 보더니 크기가 너무 작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집주인에게 선금으로 지불한 돈 20위안을 돌려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그 20위안을 차비로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이를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일본경찰서에 가서 박성순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먼저 나에게 계약을 위해 수고한 1개월의 수고비 30위안을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박성순을 신고했던 것입니다. 일본 경찰서에서는 저의 신고를 받아들여 박성순에게 경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박성순이 일행을 데리고 와서 저를 강제로 끌고 산시항(陝西巷) 동야강쓰(東亞公司) 내로 가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의 옷은 심하게 찢어졌으며 저도 부상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¹³⁸⁾

마찬가지로 고소된 한인 박성순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저는 현재 산시항(陝西巷) 43호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으며 명석[草蓆] 판매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래에 들어 다른 곳에 조그마한 상점이라도 열어 장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소개받은 중국인 린바오평의 중개를 통하여 후광치아오(虎坊橋) 40호에 가게자리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린은 세를 얻는 과정에서 20위안을 먼저 선금으로 집주인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며 제게 받아갔습니다. 저는 그 돈이 집주인에게 전달되었고 이렇게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를 얻은 과정에 대해 알아보니 린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약을 성립시켰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만약 이렇게 세를 얻은 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경찰에 발각되면 큰 후환이 생길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린에게 일전에 가지고 간 돈 20위안을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돈을 돌려주지는 않고 얼버무리면서 핑계를 대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이는 린이 저에게 사기를 친 것이 분명합니다.¹³⁹⁾

138) 北京市檔案館 所藏, 위의 당안.

139) 北京市檔案館 所藏, 위의 당안.

박성순은 린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린은 반대로 박성순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맞고소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상반되는 가운데 경찰은 두 사람을 소개시켜 준 한인 류서평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가 두 사람을 소개시켜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린이 세를 얻는 과정에서 가격이나 제반 사항에 대해서 박성순에게 일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린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제 친구인 박성순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집으로 들어간다면 분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순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을 먼저 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¹⁴⁰⁾

상술한 안건에서 두 사람을 소개시켜준 또다른 한인 류서평과 사건 당사자였던 박성순 모두 가옥 임대 과정에서 중국인의 명의를 차용해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미 명백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에게 정부가 제정한 규정들 가운데 적어도 주택 임대와 관련된 규정과 그것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공지가 일정 정도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성순을 비롯한 한인들은 이러한 일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국 측의 정책에 근거하여 추방당하는 주위의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는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었던 한인들의 위축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했다. 당장의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급급했던 일반 한인들에게 있어서 가옥 임대료의 3배까지 달하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위

140) 北京市檔案館 所藏, 위의 당안.

법 행위를 저지른 경험이 있었다는 기록이 경찰 측에 남겨짐으로 인하여 앞으로 베이징에서 거주하면서 받게 될 수도 있는 불이익은 더 두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점이 박성순으로 하여금 먼저 계약을 취소하려는 행동을 취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이 중국인으로 둔갑하거나 중국인이 한인을 대신하여 주택 임대 계약에 나서는 일은 종종 있었다.¹⁴¹⁾ 한인으로서의 까다로운 공안국의 인준 과정을 피하여 정착할 방법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으며, 중국인으로서도 번거로웠지만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중국 측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한인 박성순은 상해죄로 중국인 린바오밍에게 고소당했으므로 일본 총영사관에 이들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다.¹⁴²⁾

린바오밍이 박성순을 대신하여 중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집을 얻은 것 또한 명백한 불법행위였다. 한인에게 중국인의 명의를 임의적으로 빌려줌으로써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는데, 이는 행정에 혼란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에서도 엄격하게 금하는 금지사항이었던 것이다. 중국은 이런 경우에 대하여 즉시 계약을 취소시키는 한편 계약한 임대료의 1배에서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중국인에게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¹⁴³⁾ 적용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금으로 받은 돈 20위안을 자신의

141) 중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 계약을 성사시킨 경우로는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1-19637 「北平市警察局內一區警察署關於張浩三等代朝鮮人鄭德行租房未立合同的呈(1933.01)」, J181-021-29292 「北平市警察局內二區警署關於朝鮮人王賓卿冒本國名義租房驅逐不肯遷出等情請訊辦的呈(1934.01)」, J181-020-26809 「北平公安局外五區警察署關於韓人劉寶忠冒籍強行租房的呈(1936)」, J181-021-28011 「北平市警察局內二區警署關於李連青代韓人租房一案請訊辦的呈(1934.01)」, J181-021-46319 「北平市警察局外二區警察署關於燕家胡同三十五號冒租民房之韓人金永泰業已驅逐仍將宋文順一案的呈(1936.01~12)」, J181-021-37599 「北平市警察局外四區警察署關於劉子章以本人名義暗為韓人李春茂租房的呈(1935.01~12)」, J181-021-37600 「北平市警察局外四區警察署關於張鎮假其名義為韓人租房的呈(1935.01~12)」, J181-021-46262 「北平市警察局外二區警察署關於宋朋年等控高萬錦假籍名義租賃房屋勾引韓人強行居住的呈(1936.01~12)」 등이 있었다.

142)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중국의 화북지역에 있는 한인에 대한 관할권은 천진에 있는 日本總領事館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한인이 피고로 고소되었어도, 기존에 맺은 불평등조약을 근거로 중국은 한인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었다.

143)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 第十五條》, 趙炳坤, 앞의 책, p.311.

수고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한인 박성순이 린을 사기로 고소한 내용이 기소하기에 충분히 적합하게 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린의 진술서와 함께 법원으로 송치하여 최종 판결을 받게 하였다.¹⁴⁴⁾

3. 한인들의 반응

주거지를 강제로 점거하고 각종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한인들이 늘어나자, 정부는 베이징에 거주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한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기울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를 위해 한인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다는 핑계로 한인들의 소소한 행적을 파악하기 위한 무차별 감시를 진행하였다.¹⁴⁵⁾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진 곳에 대한 경찰의 수시 감시는 흔한 일이었다.¹⁴⁶⁾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한인이건 중국인이건 모두 경찰의 검문을 받아야만 했으며, 소소한 목적을 위한 움직임 하나하나마저도 중국의 눈치를 봐야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들에 대하여 당사자였던 한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한인들은 차별적인 강압정책이 시행되자 집단적 반발심을 품게 되었다. 1934년 11월 31일 저녁 7시경, 天津의 일본조계 내에서는 北平 · 唐山 · 灤縣 · 山海關 · 昌黎 등 지역의 한인 대표들을 모인 집회가 개최되었다.¹⁴⁷⁾ 베이징의 대표는 지역별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북평시공안국이 맹독성물품이 연루된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베이징 거주 한인들을 대함에 있어 지극히 배척하기가 일쑤이며, 수시로 감시를 하다가 임의적으로 체포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¹⁴⁸⁾

144) 경찰 차원의 수사에 있어 최종 단계는 北平地方法院에 그 처벌을 위해 사건 당사자들을 송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145)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0-19942 「北平市政府關於嚴犯注意朝鮮人集會散布謠言應防犯的密令(1934.11)」

146) 北京市檔案館 所藏, 위의 당안.

147) 이 집회의 마지막에는 일본영사관을 향하여 청원서를 제출하여 보호를 요청하고, 중국에도 항의하며 각 지방장관을 교체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의하고자 하였다. 北京市檔案館 所藏, 위의 당안.

또한 唐山 등의 다른 지역의 대표들은 각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하였다.¹⁴⁹⁾

집회 개최 소식은 河北省政府 책임자에 의해 중앙으로 보고되었고, 정부에서는 한인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경계를 시작했다.¹⁵⁰⁾ 이 집회에 모였던 각 지역의 한인 대표들이 아직 해산하지 않고 모여 있으므로 각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엄밀히 주의하여 관찰하고, 단체로 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수시로 담당 부서에 보고하도록 하였던 것이다.¹⁵¹⁾ 한인들에 대한 엄중한 감시와 차별에 일반적인 생계 활동을 벌이는 데에도 방해가 받게 되자, 일부 한인들은 자신들을 감시하는 중국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감정은 사회 최하층에서 국가 권력을 대변하고 있던 헌병이나 경찰 등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한인들은 경찰의 단속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더구나 한인들 중 몇몇은 일본 세력을 등에 업은 채 사기를 치는 등 좋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¹⁵²⁾ 마약품 밀수업에 종사하며 곤봉 · 권총 등으로 무장하고 단속에 저항하기도 하면서 중국 관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¹⁵³⁾

1934년, 10월 8일 내사구(內四區)경찰서에 한인 오일록(吳逸錄)이 어떤 중국인 청년이 자신의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기에 자신들이 잡아놓았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순관(巡官) 리원위안(李文元)과 내사구 警察署의 직원 진시취안(金石萱), 그리고 헌병(憲兵) 쑨더밍(孫德明)을 청상후통(丞

148) 北京市檔案館 所藏, 위의 당안.

149) 北京市檔案館 所藏, 위의 당안.

150) 北京市檔案館 所藏, 위의 당안. 또한 J181-25211 「北平市公安局尚在偵查韓人崔吳玉家不正當集會案的函 (1935)」, J181-020-18962 「北平市公安局關於韓人密議鬧事應嚴加防犯的密諭(1934.01)」, J181-020-18965 「北平市公安局關於韓人密議鬧事致市長的密令(1934.01)」, J181-020-18966 「北平市政府關於日僞韓人陰謀擾亂仰密秘查緝的密令(1934)」, J183-002-03935 「北平市警察局內三區署關於嚴切注意朝鮮人在津召開會議, 日方組織暗殺隊分往京漢等處及日人那建雄形迹可疑注意防犯偵察防犯石友三等組織暗殺團的訓令(1934.02)」와 같은 안건에서 드러나듯이 일부 한인 여러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모임에 대해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1) 北京市檔案館 所藏, 위의 당안.

152) “(甚有倚仗外人, 欺凌狡猾者)” 《考察歸化韓民之舉動》 『申報』 1910年 7月 30日.

153) 손준식, 『華北密輸(1933-1937)와 日本의 中國侵略』, 『中國近現代史研究』 16, 1998, p.79.

相胡同)의 또다른 한인 권중신(權重愼)의 집으로 가서 조사를 하게 되었다.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하니 이 집에 있었던 한인들은 중국인이 도둑이 아니라 자신들은 없는 白面을 내놓으라면서 행패를 부리길래 자신들이 그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헌병 쑨더밍(孫德明)이 그 중국인이 자신과 같은 第五中隊에 소속된 헌병인 장충샤오(張忠孝)라고 확인해주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제조사를 통해 헌병 장충샤오가 한인 권중신의 집 앞을 감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집에서 나온 한인들에 의해 집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마구잡이식으로 폭행을 당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게다가 그에게 백면을 구입하고자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하였으며, 경찰에도 도둑이 들었다고 허위신고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권중신은 수사를 위해 경찰서로 연행되어 한 진술에서 자신이 정당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관할하는 단(段)에서 守望하여 그 주택 부근을 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택을 출입하는 중국인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하였다.¹⁵⁴⁾ 10월 8일에는 이 집을 출입하는 중국인들 가운데 왕징쉬엔(王景軒)이라는 자를 조사하여 백면을 휴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관할 경찰서로 보내어 조사를 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무차별적인 감시와 조사로 인해 헌병이나 경찰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져가던 상황에서 마침 집 앞을 지나가던 헌병이 눈에 띄었고, 그를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¹⁵⁵⁾ 즉,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 제공을 정부에서 제공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권중신이 헌병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행위는 헌병 및 경찰의 위엄을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체면을 손상시킨 것으로 간주하였다.¹⁵⁶⁾ 또한 엄격한 독품 금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

154)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0-14955 「北平市政府關於憲兵張忠孝被韓人權重愼毆傷的訓令(二)(1934.10)」

155) 北京市檔案館 所藏, 위의 당안.

156) 권중신의 안전 이외에도 한인이 중국 경찰에 폭행을 가한 사건은 상당수였다. 全宗號 J184-002-16915 「北平市警察局外五區署關於楊賦紳控楊潤生強暴傷害, 內三警士被韓人毆傷孫緒楊等向程民徽等毆打傷兵在戲園來衆毆打警士被學生毆傷等案(1924年1月-12月)」, J181-021-25762 「北平市警察局內三區署關於韓人售白面毆傷警察一案的呈(1934.11)」, J181-020-21913 「北平

고자 애쓰던 정부의 노력에도 막대한 방해로 가져다 준 것이었다.¹⁵⁷⁾ 또한 권중신은 사건 발생 이후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내이구에 거주하다가 내사구의 지역으로 이주해온 것이었으며, 이름마저 권치봉(權致鳳)으로 바꾸면서 행적을 교묘하게 감추려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민국 성립 직후부터 정부가 시도했던 외국인 · 독품 관리 정책들과는 정반대되는 행동들이었다.

이 한인 吳逸祿은 같은 해 11월에는 內三區의 다즈잉(達智營) 15호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떠나지 않고 있다가 이들에 대해 조사 · 처리하기 위해 온 호적경사 리우쿤시(劉焜熙)를 폭행하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였다.¹⁵⁸⁾ 국가 권력을 사회의 가장 하층에서 실행하고 있던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이는 주택 강제 점거라는 단순한 하나의 사건을 넘어 경찰의 위신에 위해를 가하고 중국에 대항한 사건으로 인식되었다.¹⁵⁹⁾

주택 불법 점거는 제정된 규정을 어겼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 곳이 마약과 같이 사회에서 금하는 물품의 거래에 악용되면서 사회 치안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문제가 더 컸던 것이다. 더구나 당시 정부는 마약류로 인한 사회악의 근원을 제거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었다. 위반한 자들에 대해서는 시 영역 내에서 거주하게 할 수 없으니, 당장 외부로 나가라는 추방하는 처벌을 내리고자 하였다. 이는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자들을 처벌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법이었다.

市公安局關於便衣警徐錫增被韓人金敬載毆傷查其下落見報的指令(1935.10)」, J181-021-21837 「北平市警察局內四區警察署關於巡警王增秀報被韓人崔守福打傷請訊辦的呈(1934.10)」, J181-020-26515 「北平市公安局關於警士邱俊賢巡邏被韓人金永瑞毆傷仰飭調治訓令(1936.05)」 등이 경찰이 한인에 의해 폭행당한 사건들이 기록된 당안들이다.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들 대부분 또한 행적 파악이나 보호를 핑계로 무차별적인 감시를 당하고 있자 이에 불만을 품고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57)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0-14954 「北平市政府關於憲兵張忠孝被韓人權重慎毆傷的訓令(一)」

158)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0-21937 「北平市警察局內二區署關於吳逸祿毆傷警士劉焜熙請向日方交涉的呈(1934.11)」

159) 주택을 강점한 한인들에 대한 조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로는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1-28137 「北平市警察局內四區警察署關於巡警王增秀報被韓人崔守福打傷請訊辦的呈(1934.10)」, J181-020-26515 「北平市公安局關於警士邱俊賢巡邏被韓人金永瑞毆傷仰飭調治訓令(1936.05)」

이러한 추방령에 대하여 처음에는 완강하게 저항하던 한인들은 돌아갈 준비를 할 여유를 달라고 간청했고, 정부에서는 이를 어느 정도는 수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여 나갈 것을 명령하였다.¹⁶⁰⁾ 결국 정부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들에 대해서 사회 치안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한 정책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60) 권중신에 대한 추방령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권중신과 가족들은 이미 그 집을 떠난 상태였으며, 그들이 사용하던 가구를 비롯한 일체의 家物들은 또다른 한인인 최승정(崔承禎)이 지키고 있었다. 최승정에 의하면 권중신 일행은 이미 친진으로 떠났다고 하였다. 최승정은 허벅지 부위에 부스럼 병이 발병하여 거동이 불편해진 이유로 아직 추방되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만약 그를 계속 여기에 남겨 둔다면, 권중신이 암암리에 돌아와 다시 거주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최승정과 그가 지키고 있는 家物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여 추방되도록 함으로써 독의 근원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北京市檔案館 所藏, 全宗號 J181-020-14955 「北平市政府關於憲兵張忠孝被韓人權重慎毆傷的訓令(二)」

結 論

중국에서는 청말 서양의 침입이 본격화되면서부터 고조된 위기감으로 인하여 국민국가의 형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동시에 그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국가의 구성원이자 주체인 ‘국민’의 자격을 법적으로 규정하였고, 그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 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경국민정부도 다양한 법령을 반포하고, 행정적 조치들을 시행함으로써 구성원인 국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필자는 그 속에서 국민이 아닌 타자로 규정되어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베이징 내에 살아가고 있던 외국인들에 주목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근대국민국가로의 지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남경국민정부가 베이징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였는가를 통해 타자로 규정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외국인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1858년 영국과 체결한 《天津條約》을 통해 베이징에서 외국인의 거주 및 이동이 합법적으로 인준되기 시작했다. 만청 정부는 중국에 들어와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나자 현황조사를 통해 그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였다. 거주 중인 외국인 숫자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영업 · 종사하고 있는 직업 분류 · 중국인과의 분쟁 발생 유형 · 외국인의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사건 발생 빈도 · 사고 유형 · 베이징 거주 기간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월별로 수치를 조사, 통계를 내고 표로 작성하여 중앙에 보고함으로써 관리의 유용함을 도모하였다.

근대 국민국가로의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던 민국시기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선 정부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베이징 내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들을 크게 조약을 체결한 외국인(有約國外人), 舊約이 이미 폐

기되었으나 새로운 조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외국인(舊約已廢新約未訂之外國人), 그리고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인(無約國人)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과거 불평등조약 체계 하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못하였던 과거에서 탈피, 외국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적 제재를 천명하였다. 이는 남경국민정부의 외국인을 본격적인 관리대상으로 인식한 정부 의식의 변화와 그들 관리에 대한 의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관리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업무들은 경찰에 의해 이루어졌다. 경찰은 사회의 가장 하층 조직에서 보통 사람들과 직접 맞닿은 채 그들의 삶에 국가를 대신하여 관여하면서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에 대한 관리, 그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비교적 가벼운 분쟁의 중재를 통한 해결 등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였던 外事警察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전담했던 특수경찰이었다. 이들은 중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면서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우선 입국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30년 「査驗外人入境護照規則」을 반포,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護照에 대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입국하는 외국인의 신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도모하였다.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외국인이 일단 입국을 하면,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도 원활한 해결을 위한 추적이 쉽지 않다. 이에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중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해주고 있는 護照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다. 일반 중국인들에 대한 호구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외국인인은 따로 명부책을 만들고 통계를 작성하여 중앙 부서로 보고하는 등, 외국인 호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계속해서 기울였다. 여기에는 전체

외국인 인구 수 · 구(區)별 외국인 수 · 총 호구(戶口) 숫자와 더불어 외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 ·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분류 · 외국인이 연루되어 발생한 분쟁의 유형 · 외국인의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사건의 발생 빈도 · 事故 유형 · 北平 내 거주 기간 · 외국인의 주택 임대 수 ·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본국별 숫자 · 무약국인(無約國人) 및 무국적인(無國籍人) 여행 허가증 발급 수 · 무약국인(無約國人) 및 무국적인(無國籍人)의 거류 허가증 발급 신청 수 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통계보고를 통해 외국인은 관리의 대상으로 확실하게 설정되었고,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그 가운데 외국인이 베이징에서 정착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었던 거주 문제와 관리 대상자의 이동의 측면에 주목한 외국인의 행적과악이라는 문제에 주목해보았다.

베이징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지통행허가증(內地游歷執照)’을 발급받은 이후에야 이동이 가능했다. 허가증 발급을 위해서는 본국의 영사관은 물론 현재 머무르고 있는 지역 경찰 당국의 인준을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여행을 다니는 도중에도 이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만 했다. 만약 검사 시 이를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임의대로 수정을 가한 흔적이 발견될 경우, 허가증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그는 여행에 제재를 가하게 규정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중국은 지정한 규장을 준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호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를 발급받게 하여 외국인의 소소한 동향 하나하나를 정부에서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감시를 가능하게 하였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중국에 보호를 요청함으로써 인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일시적인 체류나 이동뿐만 아니라 장기 거주에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자 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 매매를 금지했던 중국에서 외국인은 가옥에 대한 임대 계약만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계약 당사자 간의 쌍방 간의 협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당국의 인준을 거쳐야만 성립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1930년(民國19年)에 반포한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했던

사항들 또한 개인의 정확한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측면이 더 많았다. 계약 성립 절차와 비용, 계약 이후의 상호 의무관계, 그리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 적발된 경우 그 처벌 사항 등에 대하여 각각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들이 베이징 내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일에 대하여 철저하게 제한을 두고자 하였다.

현황조사를 통해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들 가운데 일본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한인들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한인들이 정당한 직업 없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마약류 거래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부로 하여금 언제든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불안요소로 인식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적극적인 통제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정부가 제정한 각종 외국인 관련 규제 정책들이 이러한 한인들에게도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는가?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 측 경찰에 의해 고소된 한인들의 사례들도 적지 않았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많은 수의 한인들이 주택 임대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제정된 규정에 따르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공안국 인준이라는 과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가 중국인 집주인과 갈등을 일으켜 중국 경찰에 신고되는 일이 많았다. 정부는 주택을 불법적으로 점거한 채 마약과 같은 사회에서 엄히 금하는 물품을 다루다가 경찰에 신고된 한인들이 적지 않음에 주목, 이들에 대한 강경한 대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중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 계약을 성사시켰다가 나중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부 중국인들은 이러한 한인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점을 취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주택 임대를 둘러싼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만연하였다.

중국 정부는 또한 주거지 문제에 있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뿐만 아니라 행적을 파악한다, 혹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한인들의 소소한 움직임조차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시행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들

에 대하여 당사자였던 한인들의 불만은 점차 고조되어갔고 일부는 종종 자신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찰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더욱 까다로운 임대 정책을 시행한다던가, 혹은 추방이라는 물리적 처벌로 맞대응하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인, 외국인에 대한 정책들은 중국인에게 가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까다로운 警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제대로 준수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생계는 자연스럽게 보장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과정의 복잡성과 까다로운 조건, 그리고 비용의 문제 등은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일종의 ‘차별’이 상당수 한인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끔 유도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한인들의 불법적인 행위들은 바로 남경국민정부의 의도가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어긋나고 있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상술한 경우만으로 당시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대한제국이 1910년 일본에 합병된 이래, 해외 거주 한인들에 대한 관할권이 일본 측으로 양도되었다는 점과, 그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이 꾸준히 대륙정책을 시행하며 중국으로의 세력 확대를 추진해나갔다는 점이 이 시기 한인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 영향력이 미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우월한 국제적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외국과 비교해 볼 경우 어떠한 비슷한 점이나 차이점이 있었는지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계속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겠다.

부록

[부록 1]

管轄在華外國人實施條例

第一條. 本條例所稱外國人, 專指民國十八年十二月三十一日在華享有領事裁判權之外國人民.

본 조례에서 칭하는 외국인은 민국 18년 12월 31일 현재 중국에 있으면서 영사재판권을 향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第二條. 外國人應受中國各級司法法院之管轄.

외국인은 마땅히 중국 각급 사법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第三條. 在東省特別區地方法院·瀋陽地方法院·天津地方法院·青島地方法院·上海地方法院·漢口地方法院·巴縣地方法院·閩侯地方法院·廣州地方法院及昆明地方法院及其係屬之各該高等法院內, 各設專庭受理屬於外國人爲被告之民刑訴訟案件.

동성특별구지방법원(東省特別區地方法院) · 심양지방법원(瀋陽地方法院) · 천진지방법원(天津地方法院) · 청도지방법원(靑島地方法院) · 상해지방법원(上海地方法院) · 한구지방법원(漢口地方法院) · 파현지방법원(巴縣地方法院) · 민후지방법원(閩侯地方法院) · 광주지방법원(廣州地方法院) 및 곤명지방법원(昆明地方法院) 및 관련 고등법원 내에는 외국인이 피고에 해당될 경우의 민 · 형사 소송 안전을 전담 처리하는 전정(專庭)을 설치한다.

第四條. 專庭庭長由其所係屬之法院院長兼允之.

專庭의 長은 그 법원의 원장이 겸임한다.

第五條. 外國人爲被告之民刑訴訟案件發生在第三條以外之各法院管轄者, 被告得用書面聲請受第三條以外之該管法院審理.

외국인이 피고인 민 · 형사 소송안건이 제3조에서 언급한 법원이외의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피고는 제3조 이외의 관할 법원이 심리를 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第六條. 專庭得設法律諮議若干人, 由司法行政部遴選品行端方, 具有法官資格之法律專家, 呈請派允之. 法律諮議不限於中國人. 法律諮議得用書面向法庭陳述意見, 但不得干預審判.

專庭에는 약간의 법률 자문인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품행이 단정하고 법률적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여야 하며, 파견 · 충원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자문인은 중국인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법률 자문인은 서면으로 법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심판에 간여할 수 없다.

第七條. 外國人之拘提或羈押及其住宅或其他處所之搜索, 應以刑事訴訟法行之. 外國人犯有刑法或其他刑事法規上之嫌疑, 已經逮捕者, 應即移送法院訊問, 最遲不得逾二十四小時.

외국인의 구금이나 가택 등에 대한 수색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집행해야 한다. 외국인이 형법이나 기타 형사법규를 위반한 혐의가 있어 이미 체포를 했다면, 즉각 법원으로 송치하여 심문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24시간이 넘어서는 안된다.

第八條. 外國人與外國人或與其他人民所訂仲裁契約, 經當事人之一方或雙方聲請時, 法院應認爲有效, 并執行依據該項契約所爲之決定書. 但有左列情形之一者, 不在此限 :

- 一, 違背公共秩序者 ;
- 二, 違背善良風俗者 ;
- 三, 依普通法律原則應認爲無效者 ;

외국인과 외국인, 기타 인민들과 체결한 중재계약을 체결함에 당사자 가운데 한 쪽, 혹은 양쪽 모두가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는 효력이 있음을 인정해주며,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항목의 계약의 결정서로 집행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제한하지 않는다. :

1.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것 ;
2.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것 ;
3. 보통 법률의 원칙에 의거하여 무효로 인정되는 것 ;

第九條. 外國人爲民刑訴訟案件，當事人得依據法律委任中國或外國律師爲訴訟代理人或辯護人。律師章程及其他關於律師之法令，對於前項外國律師適用之。

외국인이 민형사소송에 관계되면, 당사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중국 혹은 외국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변호사장정 및 기타 변호사 관계되는 법령은 앞항에서 말한 외국인 변호사에 적용한다.

第十條. 外國人犯違警罰者由法院或警察機關審訊之警察機關處罰外國人限於十五元以下之罰金，但再犯者不在此限。前項罰金於判定後五日以內不完納者，每一元易拘留一日，其不滿一元者，以一日計算。

외국인이 위경벌을 범했을 경우 법원 혹은 경찰기관에서 그를 심문한다.

경찰기관에서 외국인을 처벌하는 경우 15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한하되, 재범자는 이러한 제재를 두지 않는다. 앞항에서 말한 벌금은 판결확정 후 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원을 구류1일로 계산하며 1원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한다.

第十一條. 關於外國人之監禁羈押及拘留處所，由司法行政部以命令指定之。

외국인이 감금·압류·구류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사법행정부가 명령으로 지정한다.

第十二條. 本條例施行日期及其期間, 由國民政府以命令定之.

본 조례의 시행일과 기간은 국민정부가 명령으로 정한다.

各國舊約已廢新約未訂前所適用的臨時辦法

第一條. 本辦法各條所稱外國及外人, 專指舊約業已廢止, 而新約尚未訂立之各外國及其所屬人民.

본 방법의 각 조에서 말하는 외국 및 외국인은 구약이 이미 폐기되었지만 새로운 조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각 외국 및 그에 소속된 인민을 가리킨다.

第二條. 對於駐華外國外交官 · 領事官, 應予以國際公法賦與之待遇.

중국에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영사관은 국제공법에 의거한 대우를 부여받아야 한다.

第三條. 在華外人之身體及財產, 應受中國法律之保護.

중국에 있는 외국인의 신체 및 재산은 마땅히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한다.

第四條. 在華外人應受中國法律之支配及中國法院之管轄.

중국에 있는 외국인은 마땅히 중국법률의 지배 및 중국 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第五條. 由外國或外國人民輸入中國及由中國向外國輸出之貨物, 所應征之關稅, 在國定稅則未實行以前, 照現行章程辦理.

외국 혹은 외국인이 중국으로 수입하거나, 중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서 징수해야 하는 관세는 국가가 정하는 세칙이 아직 시행되지 않는 상태라면 현행 실행하고 있는 장정을 근거로 처리해야 한다.

第六條. 凡華人應納之稅捐, 在華外人, 應一律照章繳納.

모든 중국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 중국에 있는 외국인
들 또한 일률적으로 장정에 의거하여 납부해야 한다.

第七條. 凡未經上列各條規定之事項, 應依照國際公法及中國法律處理之.

상술한 각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제공법
및 중국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無約國人民管理章程

第一條. 無約國人民僑居中國境內時行政官署依本章程管理之.

무약국의 인민들이 중국의 경내에서 거주하는 경우, 행정관서는 본
장정에 의거하여 그들을 관리해야 한다.

第二條. 無約國人民入境應驗其護照及以他法調查其身分職業.

무약국의 인민들이 입국할 때에는 마땅히 여권 및 기타 방법으로
그 신분과 직업을 조사해야 한다.

第三條. 無約國人民之浮浪者赤貧者或於國內之公安衛生有生危險之虞者拒絕
其入境.

무약국 인민 가운데 부랑자 · 적빈자 혹은 국내의 공안과 위생에
해가된다 판단될 경우, 그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第四條. 無約國人民入境認為有攜帶違禁物品之嫌疑者應施行檢查前項檢查如
發見違禁物品應予扣留其情節較重者並得拒絕入境.

무약국 인민이 입국 시 금지물품을 휴대한 혐의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즉시 구류할 수
있으며, 그 죄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第五條. 無約國人民入境後如有不事正業或為不法行為有妨害治安之虞者除依
法令辦理外得限令出境其查有偵探間諜之嫌疑者亦同.

무약국 인민이 입경 후 정당한 일을 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하
여 치안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하
는 것 이외에도 限令(강제령)으로 추방할 수 있다. 정탐 및 간첩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도 마찬가지이다.

第六條. 無約國人民得在商埠或其他向準外國人居住地方居住. 在前項地方如須租賃房屋應遵守該地方租賃房屋章程.

무약국 인민은 상업구역 혹은 기타 외국인 거주가 허용된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가옥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가옥임대장정을 준수해야 한다.

第七條. 無約國人民赴內地游歷應請領護照在游歷地方不得有所測勘.

무약국 인민이 내지로 여행을 갈 경우 반드시 영사관에 護照를 신청해야 하며, 여행 간 지역에서 함부로 측량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第八條. 無約國人民不得在內地租賃產業但赴內地城鎮地方傳教以教會名義租賃房屋設立禮拜堂學校病院慈善機關者不在此限.

무약국 인민들은 내지에서 산업시설을 임대할 수 없지만, 내지 지역에서 선교를 위해 교회의 명의로 주택을 임대하여 예배당이나 학교, 병원과 같은 자선기관을 설립하였을 경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參考文獻

I. 史料

- 北京市檔案館 자료

J181-020-14387 「內一區署呈報擬具驅逐韓人辦法正在飭屬試行茲抄同原擬辦法請鑒核情形(1934.05)」

J181-018-03819 「參謀本部通知調查在京韓人良莠不齊頗堪注意卷(1914.04.01)」

J181-018-15207 「京師警察廳關於請內外二十區署分別調查在京韓人無論入籍與否均飭具相片書寫姓名列表送廳備案的訓令(1923.04.16)」

J181-021-07627 「北平市公安局內一區警察署關於金山源行迹可疑請訊辦的呈(1930.01)」

J181-021-13349 「北平市警察局外五區警察署關於朝鮮人裴鎮煜形迹可疑的呈(1921.01)」

J181-021-28098 「北平市警察局外一區警察署關於朝鮮人申雲錫與李二惠互毆請訊辦的呈(1934.07)」

J181-021-28000 「北平市警察局內一區署關於張士元私將承租之房租給朝鮮人居住未立合同請訊辦的呈(1934.01)」

J181-021-28009 「北平市警察局內三區署關於付濤等將房租借朝鮮人畏罪潛逃現經查獲歸案請訊辦的呈(1934.01)」

J181-021-28014 「北平市警察局內三區警署關於任鶴齡將房租住朝鮮人應其居住請訊辦的呈(1934.01)」

J181-021-46377 「北平市警察局內一區警察署關於柏李氏未立合同私將住房分租朝鮮人一案的呈(1936.01)」

J181-021-46273 「北平市警察局東郊區警察署關於李張氏私租與韓人文敬明等房屋的呈(1936.01)」

J181-020-16382 「北平市公安局關於令韓人朴姓騰房的訓令(1934.01)」

J181-020-16384~6 「北平市公安局關於令韓人伊仁燮騰房的訓令1,2,3(1934.01)」

J181-020-29759 「北平市公安局內外五區警察署關於日韓人占房售毒調查表(1930.01)」

J181-020-16381 「北平市公安局關於查明韓人違法侵占住房的訓令(1934.01)」

J181-020-21772 「北平市政府關於韓人住房由房主收回處置不分情等的指令(1935.01~12)」

J181-020-25281 「北平市公安局二三科關於市政府開會討論韓人租房糾葛的函(1935)」

J181-021-46710 「北平市警察局外五區警察署關於吉傅氏控告朝鮮人車普氏強占房間並據朝鮮人車普氏反控吉傅氏集眾毆傷一案的呈(1936.11)」

J181-021-21913 「北平市警察局關於便衣警徐錫增被韓人金敬載毆傷查其下落見報的指令(1935.01)」

J181-021-37472 「北平市警察局外二區警察署關於史久延控告朝鮮人李玉冒名強住間的呈1,2(1935.01)」

J181-020-22354~6 「北平公安局關於查明白質明報韓人強占房求通出的訓令1,2,3(1935.01)」

J181-021-46677 「北平市警察局外五區警察署關於劉振東控告朝鮮人朴永浩等人強占住房一案的呈(1936.01)」

J181-021-36010 「北平市警察局內四區警察署關於王華溪報告韓人金彩厚強住房屋的呈(1935.01)」

J181-021-36539 「北平市警察局外二區警察署關於於文順控告韓人王精武霸住房屋的呈(1935)」

J181-021-36540 「北平市警察局外三區警察署關於李雨軒報韓人張哲先冒租民房的呈(1935)」

J181-020-22364 「北平公安局關於文西園等呈戶被朝鮮人侵占請予保護的呈(1935.01)」

J181-021-37472 「北平市警察局外二區警察署關於史久延控告朝鮮人李玉冒名強住間的呈1,2(1935.01)」

J181-020-22354~6「北平公安局關於查明白質明報韓人強占房求通出的訓令1,2,3(1935.01)」

J181-021-46677「北平市警察局外五區警察署關於劉振東控告朝鮮人朴永浩等人強占住房一案的呈(1936.01)」

J181-021-36010「北平市警察局內四區警察署關於王華溪報告韓人金彩厚強住房屋的呈(1935.01)」

J181-021-36539「北平市警察局外二區警察署關於於文順控告韓人王精武霸住房屋的呈(1935)」

J181-021-36540「北平市警察局外三區警察署關於李雨軒報韓人張哲先冒租民房的呈(1935)」

J181-020-22364「北平公安局關於文西園等呈戶被朝鮮人侵占請予保護的呈(1935.01)」

J181-021-46688「北平市警察局外二區警察署關於鐵門五號房主吳蕉國控告房客夏杰亭勾結朝鮮人趙尙俊強行占住房間售索毒品一案的呈(1936.01)」

J181-020-21683「北平市政府關於韓人尹歸漢霸住民房同日使館商議會期騰出的指令(1935.01~12)」

J181-020-21684~5「北平市政府關於韓人尹歸漢霸民房勒令騰出的指令(二,三)(1935.01~12)」

J181-020-21600「北平市警察局內四區關於韓人梁奉潔與友人金姓等人酒醉爭吵以傷輕微不願起訴令(1935.06)」

J181-020-31060「北平市警察局外二區警察署關於韓人金京珍與他人發生紛糾經交涉已道歉的呈(1937.04)」

J181-020-21401「北平市警察局內二區警察署關於韓人治世國與軍士郭鉅和等爭吵毆打經警排解情形的呈(1935.08)」

J181-021-37760「北平市警察局外一區警察署關於韓人金思業與崔延亨互控毆打的呈(1935.11)」

J181-020-21937「北平市警察局內二區署關於吳逸祿毆傷警士劉焜熙請向日方交涉的呈(1934.11)」

J181-021-28137「北平市警察局內四區警察署關於巡警王增秀報被韓人崔守福

打傷請訊辦的呈(1934.10)」

J181-020-26515 「北平市公安局關於警士邱俊賢巡邏被韓人金永瑞毆傷仰飭調治訓令(1936.05)」

J181-020-21937 「北平市警察局內二區署關於吳逸錄毆傷警士劉昆熙請向日方交涉的呈(1934.10)」

J181-020-14954 「北平市政府關於憲兵張忠孝被韓人權重愼毆傷的訓令(一)」

J181-020-14955 「北平市政府關於憲兵張忠孝被韓人權重愼毆傷的訓令(二)(1934.10)」

J184-002-16915 「北平市警察局外五區署關於楊賦紳控楊潤生強暴傷害，內三警士被韓人毆傷孫緒楊等向程民徽等毆打傷兵在戲園來眾毆打警士被學生毆傷等案(1924年1月-12月)」

J181-021-25762 「北平市警察局內三區署關於韓人售白面毆傷警察一案的呈(1934.11)」

J181-020-21913 「北平市公安局關於便衣警徐錫增被韓人金敬載毆傷查其下落見報的指令(1935.10)」

J181-021-21837 「北平市警察局內四區警察署關於巡警王增秀報被韓人崔守福打傷請訊辦的呈(1934.10)」

J181-020-26515 「北平市公安局關於警士邱俊賢巡邏被韓人金永瑞毆傷仰飭調治訓令(1936.05)」

J181-020-14387 「內一區署呈報擬具驅逐韓人辦法正在飭屬試行茲抄同原擬辦法請鑒核情形(1934.05)」

J181-021-25766 「北平市政府關於將售毒韓人抄辦並驅逐出境的指令(1934.01)」

J181-021-45594 「北平市警察局外二區警察署關於林寶亨控朝鮮人朴成淳將伊毆打朴成淳訴林寶亨欺騙的呈(1936.07)」

J181-021-19637 「北平市警察局內一區警察署關於張浩三等代朝鮮人鄭德行租房未立合同的呈(1933.01)」

J181-021-29292 「北平市警察局內二區警署關於朝鮮人王賓卿冒本國名義租房驅逐不肯遷出等情請訊辦的呈(1934.01)」

J181-020-26809 「北平公安局外五區警察署關於韓人劉寶忠冒籍強行租房的呈(1936)」

J181-021-28011 「北平市警察局內二區警署關於李連青代韓人租房一案請訊辦的呈(1934.01)」

J181-021-46319 「北平市警察局外二區警察署關於燕家胡同三十五號冒租民房之韓人金永泰業已騙逐仍將宋文順一案的呈(1936.01~12)」

J181-021-37599 「北平市警察局外四區警察署關於劉子章以本人名義暗為韓人李春茂租房的呈(1935.01~12)」

J181-021-37600 「北平市警察局外四區警察署關於張鎮假其名義為韓人租房的呈(1935.01-12)」

J181-021-46262 「北平市警察局外二區警察署關於宋朋年等控高萬錦假籍名義租賃房屋勾引韓人強行居住的呈(1936.01-12)」

J181-020-19942 「北平市政府關於嚴犯注意朝鮮人集會散布謠言應防犯的密令(1934.11)」

J181-020-25211 「北平市公安局尚在偵查韓人崔吳玉家不正當集會案的函(1935)」

J181-020-18962 「北平市公安局關於韓人密議鬧事應嚴加防犯的密諭(1934.01)」

J181-020-18965 「北平市公安局關於韓人密議鬧事致市長的密令(1934.01)」

J181-020-18966 「北平市政府關於日僞韓人陰謀擾亂仰密秘查緝的密令(1934)」

J183-002-03935 「北平市警察局內三區署關於嚴切注意朝鮮人在津召開會議，日方組織暗殺隊分往京漢等處及日人那建雄形迹可疑注意防犯偵察防犯石友三等組織暗殺團的訓令(1934.02)」

J181-020-13140 「1934年北平市政府關於對僑居北平外國人行使警察權的密令」

- 통계자료

晚清시기

內外城巡警總廳 編, 『內外城巡警總廳 統計書』, 光緒32年(1906年).
內外城巡警總廳 編, 『北京內外城巡警總廳第一次統計書』, 光緒34年.
內外城巡警總廳 編, 『北京內外城巡警總廳第二次統計書』, 光緒34年.
內外城巡警總廳 編, 『北京內外城巡警總廳第三次統計書』, 光緒34年.
京師警察廳 編, 『京師內外城巡警總廳第三次通計書』, 光緒34年.
京師警察廳 編, 『(宣統元年~宣統三年)京師內外城巡警總廳通計書』, 1916年.

南京國民政府 시기

北平市政府公安局 編, 『北平市政府公安局施政統計表』, 民國24年.
北平市政府 秘書處 第一科 統計股, 『北平市統計要覽』, 民國25年.
北平市政府警察局 『北京特別市公署警察局業務報告』, 民國27年.
北京特別市公署警察局, 『北京特別市公署警察局民國29年各種統計』, 民國29年.

- 기타

王鐵崖 編, 『中外舊約章彙編』 第一冊, 三聯書店, 1957.
褚德新 · 梁德 主編, 『中外約章滙要』, 黑龍江人民出版社, 1991
蔡鴻源 主編, 『民國法規集成』 第17冊, 黃山書社, 1999.
蔡鴻源 主編, 『民國法規集成』 第18冊, 黃山書社, 1999.
蔡鴻源 主編, 『民國法規集成』 第39冊, 黃山書社, 1999.
蔡鴻源 主編, 『民國法規集成』 第44冊, 黃山書社, 1999.
程道德 外編, 『中華民國外交史資料選編1919-1931』, (北京)北京大學出版社, 1985.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滙編』 第五輯 第一編, 江蘇古籍出版社, 1991.
楊昭全 等編, 『關內地區朝鮮人反日獨立運動資料匯編』 上冊(1919-1945), 遼寧民族出版社(沈陽), 1987.

II. 研究 成果

1. 研究書

- 中文

孫科志, 『上海韓人社會史研究』, 學苑出版社(北京), 2004.

尹鈞科 外, 『古代北京城市管理』, 同心出版社(北京), 2002.

韓延龍 主編, 『中國近代警察制度』,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北京), 1993.

趙炳坤, 『中國外事警察』, 商務印書館(上海), 1935.

陳允文, 『中國的警察』, 商務印書館(上海), 1934.

趙志嘉, 『長警的實際教育』, 上海警察學社出版(上海), 1933.

- 國文

朴樞, 『20세기 전반 동북아 한인과 아편』, 선인, 2008.

2. 연구 논문

- 中文

康大壽, 「古代中國對在華外人的法律管理」, 『信陽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7-20-3.

邱樹森, 「唐宋 “蕃坊” 與 “治外法權”」, 『寧夏社會科學』 2001-5.

賴存理, 「唐代 “住唐” 阿拉伯, 波斯商人的待遇和生活」, 『史學月刊』 1998-2.

柴松霞, 「略論晚清政府關於來華外國人內地游歷的執照制度」, 『時代法學』 2007-05-04.

- 國文

林相範, 「‘民’에서 ‘國民’으로 - 5 · 4運動期 北京地域을 中心으로 -」, 『中國近現代史研究』 2, 1995.

- 林相範, 「20世紀 前半期 北京의 警察과 市民生活」, 『中國學報』 48, 2003.
- 林相範, 「近代中國에서 首都警察의 成立 - 1901년부터 1928년까지 北京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83, 2003.
- 金相範, 「唐代 後半期 揚州의 發展과 外國人社會」, 『中國史研究』 第48輯, 2007.
- 朴漢濟, 「唐代 長安의 空間構造와 蕃人生活」, 『동아시아 역사의 還流』, 서강대학교 동양사연구소 역음, 지식산업사, 2000.
- 崔在榮, 「唐 前期 長安內의 소그드人 대책」,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논집』 23, 1999.
- 박제균, 「중국국민당의 당국체제와 국민국가 2 : 중국국민당의 민족주의 이념과 “혁명외교”」, 『中國近現代史研究』 31, 2006.
- 鄭址鎬, 「清末 國籍法制定과 ‘國民’의 境界」, 『中國史研究』 52, 2008.
- 李昇輝, 「五卅事件과 上海 公共租界 工部局」, 『中國近現代史研究』 21, 2004.
- 金泰丞, 「1930年代 以前, 上海 公共租界의 支配構造와 華人參政運動」, 『東洋史學研究』 58, 1997.
- 손재현, 「프랑스의 租界 확장에 대한 天津 시민의 대응 - 1916년 老西開 사건을 중심으로 -」, 『大丘史學』 76, 2004.
- 孫艷紅, 「1920년대 전반 북경지역 한인의 생활상과 민족교육」, 『北岳史論』 10, 2003.
- 孫艷紅, 「1910~1920년대 중반 북경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의 특징」, 『한국 근현대사연구』 30, 2004.
- 손준식, 「華北密輸(1933-1937)과 日本의 中國侵略 - 밀수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 『中國近現代史研究』 16, 1998.

- 英文

Benj. H. Williams, “The Protection of American citizens in China : Extraterritoriality”,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6

No. 1, (January 1922).

Benj. H. Williams, "The Protection of American Citizens in China : Cases of Lawlessness" ,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7 No.3, July 1923.

Edmund S. K. Fung, "The Chinese Nationalists and the Unequal Treaties 1924-1931", *Modern Asians Studies*, Vol. 21 No. 4. 1987.

Xu Xiaoqun, "The Fate of Judicial Independence in Republican China, 1912-37", *The China Quarterly*, No.149, March 1997.

- 中文概要 -

南京國民政府的外國人管理與北京地域的韓人

- 以把握行蹟及統制居住爲中心的 -

金恩珍

史學科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自古以來，中國已經作出了積極的對外交往。與此同時，外國人來中國已經較長的歷史。在這個過程中，更多的外國人留在中國。然而，在19世紀末20世紀 中國強大的國家和簽署該條約，因此對入侵在中國的外國居民將失去權力。在中國，可能是由西方國家分裂的的危機感越來越多，應對危機的一種新形式的近代國民國家的政治社會，開始了討論。同時，以近代國民國家的主體，對養成國民的關心也越來越高潮了。

阿片戰爭以來，來華外國人數漸漸增加了。南京國民政府設定了在華外國人爲需要管理的對象，爲了更高效的管理，制定了各種各樣的規章。這種政府的態度變化，就是比過去在不平等條約體制下對在華外國人無氣力的行動看，可以說更進步發展的。

南京國民政府時期在北京外國人中，韓人數最多的。當時日本正在對中國要侵略的野心越來越擴大，而是1910年韓日合邦以來，日本有着對在華韓人的管轄

權。這樣特殊的狀況，可以說爲了把握南京國民政府的在中外國人管理政策的最好的手段。

南京國民政府以爲在北京居留的外國人基本上應當受中國法律的管轄，所以以中國與外國人本國的關係爲基準，區分了三個種類如下：無約國人，舊約已廢新約未訂之外國人，有約國外國人。

從入境審查，對外國人的管理開始了。以徹底的檢查本國發給的護照，意圖了確認入境外國人的身分。這是爲了防止因入境外國人的不正的行爲可能發生的問題，還有維持中國社會的安寧。對在北京一時居留或長期居住外國人現況的調查也是這種外國人管理政策的一些方法。調查戶口過程中，如果發見居住中的外國人，立刻作成別的名冊·作出統計，報告了中央官署。

如上所述，南京國民政府特別注意了在北京外國人的管理，所以制定了各種各樣的規制政策。其中特別引人注目的把握行績與統制居住地的問題。因爲這兩個問題，可以說對在北京居住外國人的日常生活管理的最基本的辦法。

如果外國人要去北京外部的地方，一定要發給‘內地游歷執照’。這是先從本國領事館發給，然後應該經過中國警察當局的認准，才發生以執照的效力。在旅途的外國人應當所持執照，爲了協助中國警察的檢查，應立刻提出。中國警察有應檢查外國人執照的結果向中央政府報告，通過這種過程，中央政府可以把握與監視外國人的動態。

南京國民政府原則上不許在中外國人的土地賣買行爲，然而只許可了租房。這個租房交易，應通過警察當局的認准，才能成立。1930年，南京國民政府頒布《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規定了外國人租賃順序·適當的費用·交易當事者的義務·違反時處罰辦法等等。但是，因過程的複雜性·費用等等，對韓人來說，不是容易的問題。

可是，當時在北京居住的韓人中多數犯了與租賃房地有關的違法行爲。因不法占據了房地，與中國人發生叫葛，有時被中國警察控告了。因一邊不法占據房地，一邊辦理跟白面相似毒品的事案，被警察控告的事情比較多。而且有的中國人以利用自己的名義，協助韓人租賃房地，因此兩邊都被警察控告的事情也發生了。

一般來說，南京國民政府以給跟自國民同樣的待遇，對在華外國人要求

遵守中國的警章。這就是對韓人來說，過程的複雜性 · 煩難的條件 · 費用的問題等等，讓他們感覺被中國受一種的差別。